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 UCP600의 국제상무적용에 대한 연구

-취소불가능의 해석과 통지은행의 책임확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Application the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of UCP600

지도교수 정 홍 열

2007年 12月 19日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金 鉉 初

本 論文을 金鉉初의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위 원 장    최    종    수            (인)

위    원    정    홍    열            (인)

위    원    이    수    호            (인)

2007年 12月 19日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신용장결제방식의 장단점비교

제1절 신용장의 이점 .....	5
1. 수출상의 이점 .....	6
2. 수입상의 이점 .....	6
3. 물품공급자 (Suppliers) .....	6
제2절 국제대금결제상 신용장결제방식의 비중 .....	7
1. 수출신용장결제비율 .....	7
제3절 신용장거래의 한계 .....	12
1. 수입상의 정상물품 수취여부의 미확정성 .....	12
2. 수출상의 성신행에 대한 수입상의 의도적인 불성실 .....	13

### 제3장 신용장통일규칙의 변천과정

제1절 각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배경 .....	14
1. 제1차 개정 .....	15
2. 제2차 개정 .....	16
3. 제3차 개정 .....	16
4. 제4차 개정 .....	17
5. 제5차 개정 .....	17
제2절 UCP600의 개정과정과 특징 .....	18
2. UCP600의 주요특징 및 신설규정 .....	19
2-1. 간결명확한 표현과 중복회피 .....	19
2-2. 지급관련 용어의 명확성규정 .....	20
2-3. 취소가능신용장의 규정삭제 .....	20
2-4. 선적기일, 환어음기일의 해석변경과 추가 .....	21
2-5.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의 삭제 .....	21
2-6. 서류심사와 통지기간의 단축 .....	22

2-7. 연지급확약서에 대한 할인허용 .....	23
2-8. ISBP 규정의 반영 .....	24
2-9. 원본서류의 인정범위에 대한 규정 삭제 .....	26
2-10. 모든 관계당사자를 은행으로 변경 .....	26
2-11.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부담시점 조항신설 .....	26
2-12. 진정성여부에 대한 통지은행의 책임확대 .....	27
2-13 신용장의 변경통지에 대한 자동승낙조건부 무시규정 신설 .....	28
2-14 제2통지은행의 개념 신설 .....	28
2-15. 운송서류의 발행인 규정 신설 .....	29
2-16.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한 준거규정 신설 .....	30
2-17. 서류상의 수익자 및 개설의뢰인의 주소 표기 .....	30
2-18. 불일치서류의 거절통지횟수규정 신설 .....	31
2-19. 불일치서류의 거절통지내용을 구체화 .....	31
2-20. 보관중인 불일치서류의 반송규정 신설 .....	32
2-21. 원본서류 및 사본서류의 허용범위 구체화 .....	32
2-22. 상업송장상의 통화와 신용장금액의 통화일치규정 신설 .....	33
2-23. 운송서류관련 조항상의 범선적재금지 문언등의 삭제 .....	33
2-24. 운송서류의 명칭 .....	34
2-25. 운송서류상의 무고장 표시와 운임선지급 운송서류 규정의 삭제 .....	40
2-26. 보험서류 .....	46
2-27. 과부족용인조항의 일부삭제 .....	49
2-28. 송달중인 서류의 지연 또는 분실에 대한 면책 .....	49
2-29. 송달중의 서류분실에 대한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지급이행의무신설 .....	50
2-30. 불가항력조항에 폭력주의의 행위 추가 .....	50
2-31. 제2양도은행의 규정신설과 “양도가능” 문언표시 삭제 .....	51
<b>제4장 UCP600의 실무적용 및 문제점 분석 .....</b>	<b>52</b>
제1절 취소불능성과 취소가능성에 대한 문언삭제에 대한 분쟁우려.....	52
제2절 통지은행의 진정성에 대한 면책범위축소에 대한 수익자의 부담우려 ...	60
<b>제5장 연구의 한계 및 기여.....</b>	<b>65</b>
<b>제6장 결론.....</b>	<b>67</b>

<표 목차>

<표 2 - 1> 수출대금의 이용실태 .....	7
<표 2 - 2> 수입신용장 결제비율.....	9
<표 2 - 3> 수출품에 대한 신용장결제비율의 증감.....	10
<표 2 - 4> 대외국 수입품에 대한 신용장결제비율의 증감.....	11
<표 2 - 5> 평균변동환율표.....	11
<표 3 - 1>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연혁.....	15

<그림 목차>

<그림 2 - 1> 신용장의 개설과 이용절차.....	5
<그림 2 - 2> 수출신용장결제비율.....	8
<그림 2 - 3> 수입신용장결제비율.....	10

# Abstract

A Study on Application the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of UCP600

by Kim, Hyuncho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re are many factors to be considered importantly in the international trade such as overseas market research, promotion, credit inquiry, punctual delivery, protect claim against unexpected things, etc. Among them two factors, punctual delivery and receipt of payment in side of seller, receipt of contracted goods without any risks in side of buyer,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when we are doing international transaction. The international trade would be understood international transactions which are made by exchanging value of goods among countries, having different cultures, custom, language, rules and systems.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also has been doing through complicated and various types of payment, consisting of a lots participant, exporters, importers, banks, authorities.

There may be seen lots of unexpected risks arising from controversies, arguments and the gap of understanding of parties concerned under the background mentioned above.

The elements of the risks may be happened as various types in result of doing the contracted goods, the parties concerned, the time and terms of payment , the law and business circumstances of the counter part.

The most part of risks are caused by the uncertainty of the punctual delivery, the quality and receipt of payment.

The trade terms by a Letter of Credit through long customary usage is

set more patterned term than others. The purpose of the Letter of Credit term serves to smooth payment which interchanges the credit of parties to higher public trust of banks.

The Letter of Credit(L/C) had been mainly used in Europe practically and commercially since the International uniform of Credit appeared.

Since then,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ICC Publication No.500 (commonly called UCP500) revised continually per about 10years has been applied to the L/Cs under the change and progress of international circumstances, various goods sold and practical application in business.

The UCP500 according to the fifth revision being addressed in May 13th, 1993 has been applied since Jan 1, 1994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has collected the opinions of administration concerned, banks and working groups to solve some controversies which had been discussed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of UCP500

The Banking Commission being held in Oct 25. 2006 , Paris allowed the UCP600. It has been examined thoroughly and It is effected from July 1st in public thoroughly examining of draft for six month test work.

This study is to list of changed articles and to present the counter measures

This study presents some counter measurement of controversial articles which may arise at the time of effect of UCP600, and is to analyze problems bringing confusion on practical apply owing to a short of understanding of UCP600.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국제무역은 문화와 관습, 언어, 법률, 체제 등을 달리하는 국가와 국가간에서 금전을 대가로 하여 이루어지는 국제적 매매행위라 할 수 있다. 국제적 거래 형태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수출입업자간의 상호 이해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중개하는 은행, 기관 등의 다수 참여가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형태와 결제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루어지는 국제무역에서는 의견의 충돌 및 상호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각종 예측불능위험요소가 많이 있다. 위험의 요소는 교역상품, 매매상대방, 결제의 시기와 방법, 상대국의 법률과 무역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계약물품의 정시인도, 계약상품의 품질, 대금의 수취의 불안정성과 지급의 시기를 들 수 있다.

매매당사자는 상호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상반되는 견해를 갖게 된다. 매매행위에 있어서 수출자와 수입자는 대금지급과 상품의 인도에 있어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수입상은 상품을 받아서 품질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싶어 할 것이고, 수출자는 대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서로의 유리한 주장만 하게 되면 무역거래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두 이해당사자간의 주장을 절충하는 합리적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제3자인 은행을 개입시켜 대금결제와 상품의 인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신용장(Letter of Credit)의 탄생배경이다.

오랜 관습적사용을 거쳐서 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조건은 타 결제방식보다는 정형화된 무역결제방식이다. 신용장에 의한 결제는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은행이 개입하여 양당사자들의 신용을 보다 공신력이 높은 신용으로 대체시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장 거래는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시켜 개설은행에 제시를 하면 큰 문제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혹시 발생하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해서도 확실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다양한 대금지급방식이 이용되고 있으나 특히 신용장방식은 추심방식(D/A, D/P)이나 송금방식(T/T)에 비하여 금융기능과 지급보증기능을



갖고 있어 금융적 불편이나 신용위험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편리성과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결제수단으로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장은 수입상의 수출대금지불능력을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요청하여 지정하는 특정은행(개설은행)이 대신하여 지급확약함으로써 수입상의 결제에 대하여 수출상에게 수출대금회수를 보장하고 수입상에 대해서는 상품수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제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금융수단이다<sup>1)</sup>.

신용장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안이 나오기 전부터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실무의 관행과 상관습에 따라 이용되고 있었다. 통일된 규칙의 성립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1926년부터 신용장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 통일의 필요성에 따라 1933년 2월 파리에서 개최된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총회에서 처음으로 UCP(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 ;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매매상품의 다양성, 실무적용의 변화에 따라 매 10여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개정을 거듭하여 제5차까지 개정된 UCP가 신용장결제방식의 통일규칙으로 적용되어왔다.

제5차 개정에 따른 UCP500은 1993년 5월 13일에 공표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ICC는 UCP500의 적용기간에 변화된 무역환경 및 그동안 제기되어온 신용장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무역관련 기관, 은행, 실무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초안의 면밀한 수정을 거쳐 2006년 10월 25일 파리에서 개최된 ICC 은행위원회에서 UCP600을 승인하기에 이르렀으며, UCP600은 6개월간의 시험운용을 거친 다음 2007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UCP600이 UCP500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이 개정되고 간략화되었지만 실무적용상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UCP600에서 명문화하지 않았거나 이해의 부족으로 실무적용상에 혼동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며, UCP600의 본격시행에서 대두될 수도 있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최정호·이제현, 신용장실무론, 박영사 2002 p.38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신용장통일규칙(UCP)는 초안이 나온 이래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10여년을 기간으로 하여 6차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각각의 UCP는 해당 버전의 개정이후에 새로이 도입된 무역시스템의 변화와 이에 대한 실무의 적용, 은행의 취급규칙과 금융취급업무의 변화에 따라 이를 새로이 반영하여 개정하여 하였다. UCP500은 1993년 개정되어 2007년 UCP600이 나오기까지 근 15년의 시간이 흘렀다. UCP500은 동 UCP를 개정할 만한 뚜렷한 무역환경의 변화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전면개정이 지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은행의 UCP실무적용 지침서인 ISBP(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Letters : 국제은행표준관습)를 통하여 보충보완을 해 왔다.

개정UCP600은 UCP와 별도로 보완적용 되어오던 ISBP의 상당부분을 UCP에 흡수하고 통합하여 해당 관련자들이 실무적용상에 혼동이 없도록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UCP의 개정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2차적으로는 국제상거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수출입자와는 유리되어온 ISBP의 UCP 적용을 고찰해봄으로써 실무적용시의 예측되는 위험과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 2. 연구의 방법

기존의 UCP와는 달리 UCP600에서는 은행의 면책범위를 축소제한하고 그 사유를 더욱 구체화시키고 명백히 하였으며, 취소불능과 취소불능의 표현적용의 구체화,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기간 단축, 연지급확약서의 할인허용 등 실무적환경의 적극도입을 통하여 수출입관련자의 능동적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출입종사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대응방안에 대한 제시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UCP500을 통하여 제기되었던 실무적용의 문제와 규정적용의 모호성 등을 국내외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 본 청구자가 무역업에 종사하는 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 권위 있는 각 유관기관·단체에서 발행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정리·검토하였다.

둘째,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 Korea Trade - 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국무역협회(KITA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대한상공회의소(KCCI ;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한국은행, 각 은행의 외환계 등을 통하여 교환된 실무적용의 애로와 해결사례, UCP적용의 해석상의 의견차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 제2장 신용장결제방식의 장단점비교

### 제1절 신용장의 이점

국제매매행위에 있어서 수출자(매도인)와 수입자(매수인)는 대금지급과 상품의 인도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수입상은 상품을 선취하여 품질과 수량 등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싶어 할 것이고, 수출자는 수출대금의 안정적확보를 위하여 대금을 선지급받고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국제무역은 격지자간의 매매이므로 예측불능의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수출상은 선적(또는 인도)를 하고도 대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신용위험(credit risk)을, 수입상은 대금을 지급하고도 상품입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위험(mercantile risk)<sup>2)</sup>이 가장 큰 위험이다. 여기서 서로의 유리한 주장만 하게 되면 무역거래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두 이해당사자간의 주장을 절충하는 합리적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제3자인 은행을 개입하여 대금결제와 상품의 인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신용장의 탄생배경이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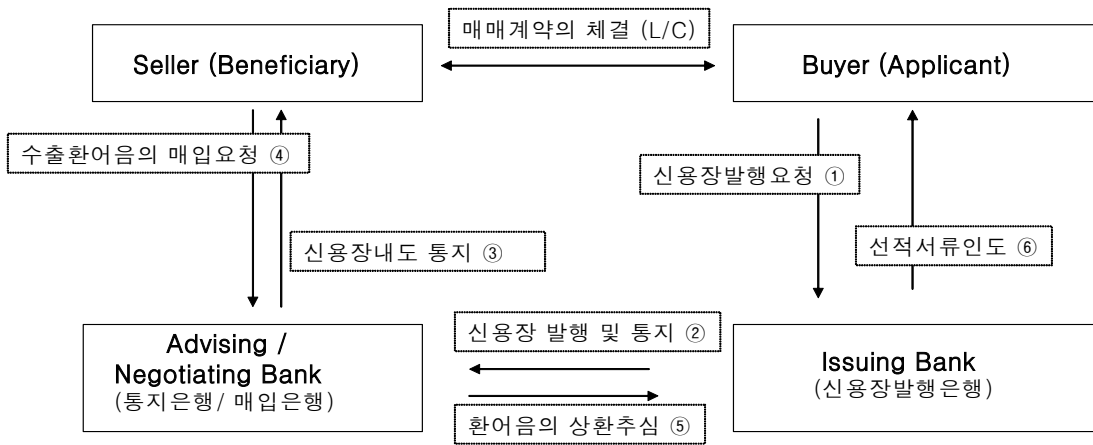
신용장에 의한 결제는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은행이 개입하여 양당사자들의 신용을 보다 공신력이 높은 신용으로 대체시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장거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시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기간내에 개설은행에 제시를 하면 큰 문제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확실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이 방식은 추심방식이나 송금방식에 비하여 금융기능과 지급보증기능을 갖고 있어 금융적 불편이나 신용위험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편리성과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 <그림 2-1> 신용장의 발행과 이용절차

---

2) 최중수 외, 국제무역결제론, 삼영사, 1998 p.44

3) 김현수, 퍼펙트 국제무역사 개정3판, 세종출판사, 2007. 1, pp.342~343



### 1. 수출상의 이점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수입상의 지급불능상태 또는 비합리적인 지급거절로 발생하는 대금회수불능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함으로써 대금회수의 확실성이 보장되며 신용장을 담보로 금융상의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수출상에 대한 독립적인 약속이 되므로 수출상이 서류를 제시하는 시점에 비록 수입상이 지급불능상태(파산, 도산, 도주, 행방불명)가 되었다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수출상은 대금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적인 수출이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취소불능신용장이 발행된 후에는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문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 2. 수입상의 이점

계약물품의 정확한 인도시기를 예상할 수 있으며 수출상의 신용위험이 상당히 제거되므로 신용장이 없는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수입물품대금을 수입어음 및 수입관련서류가 도착한 후에 지급하거나 금융을 이용하여 수입어음을 결제할 수 있는 등 은행측으로부터 금융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

### 3. 물품공급자 (Suppliers)

수출상은 수출오더를 진행하기 위하여 외주업체로부터 원자재나 부품 등을 납품받게 되는데 국내공급자의 대금결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출상은 Master L/C를 담보로 하여 국내물품공급자를 수익자로 하는 Local L/C를 발행하게 된다. 이때 원수출자는 신용장개설의뢰인(applicant)이 되며 수출자의 국내거래은행이 개설은행(issuing bank)이 된다. 수출상이 받은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내국신용장(Local L/C)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금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하고, 수출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불안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제조, 생산에 임할 수 있게 한다.

## 제2절 국제대금결제상 신용장결제방식의 비중

### 1. 수출신용장결제비율

<표 2 - 1> 수출대금회수의 이용실태(기준화폐 :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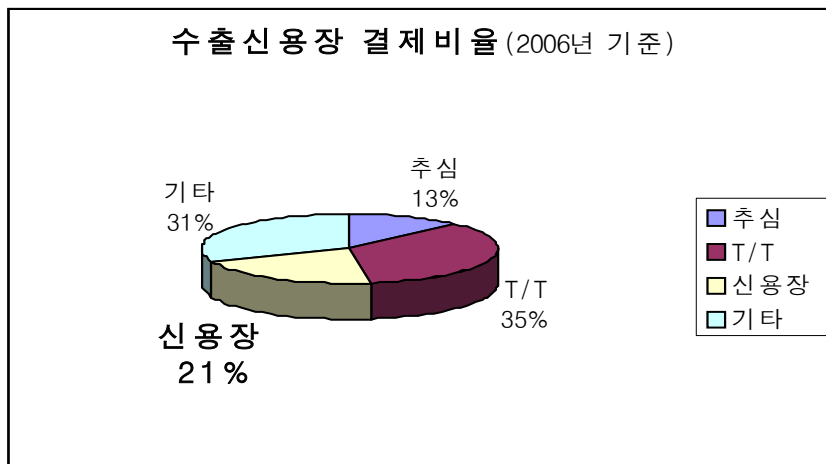
기간	2004. 01. ~ 2005. 12.			
	2004(1 ~ 12)		2005(1 ~ 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b>총 계</b>	<b>253,844,672</b>	<b>31.0</b>	<b>284,418,743</b>	<b>12.0</b>
사후 또는 동시송금방식(COD, CAD)	44,492,387	42.9	47,097,910	5.9
D/A	27,379,209	13.6	27,043,277	-1.2
D/P	5,015,760	-5.6	5,010,511	-0.1
기타 무상	4,115,017	52.8	7,584,645	84.3
기타 유상	19,571,690	54.4	21,898,900	9.3
분할영수(지급)방식	191,198	-4.8	360,701	88.7
<b>일괄출급 L/C</b>	<b>44,237,502</b>	<b>22.7</b>	<b>45,421,170</b>	<b>2.7</b>
<b>기한부 L/C</b>	<b>10,302,886</b>	<b>24.1</b>	<b>11,253,393</b>	<b>9.2</b>
임가공료지급방식의 위탁(수탁)가공무역	9,240,808	28.3	12,162,270	31.6
단순송금방식(T/T, M/T)	89,244,815	35.2	107,069,841	20.0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	53,400	-55.1	16,125	-69.8

기간	2006. 01. ~ 2007. 05.			
	2006(01. ~ 12)		2007(01. ~ 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b>총 계</b>	<b>325,464,848</b>	<b>14.4</b>	<b>145,756,949</b>	<b>14.4</b>
사후 또는 동시송금방식(COD, CAD)	51,139,785	8.6	20,412,752	-0.4
D/A	26,968,993	-0.3	11,600,751	-3.2

D/P	48,92,481	-2.4	2,094,723	-3.2
기타 무상	5,960,886	-21.4	1,793,559	-43.3
기타 유상	25,895,200	21.0	12,305,346	23.8
분할영수(지급)방식	1,001,791	177.7	641,194	68.8
<b>일람출급 L/C</b>	<b>47,377,512</b>	<b>4.3</b>	<b>20,356,920</b>	<b>9.5</b>
<b>기한부 L/C</b>	<b>14,221,172</b>	<b>26.4</b>	<b>6,180,024</b>	<b>9.0</b>
임가공료지급방식의 위탁(수탁)가공무역	16,684,624	37.2	8,493,682	51.2
단순송금방식(T/T, M/T)	131,200,974	22.5	61,762,854	25.1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	121,429	653.1	115,146	634.8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 2-2> 수출신용장 결제비율



자료 : 본인작성

## 2. 수입신용장결제비율

<표 2-2> 수입신용장결제비율(기준화폐 : USD)

기간	2004. 01. ~ 2005. 12.			
	2004(1~12)		2005(1~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b>총 계</b>	<b>224,462,687</b>	<b>25.5</b>	<b>261,238,264</b>	<b>16.4</b>
사후 또는 동시송금방식(COD, CAD)	24,983,314	26.7	31,757,868	27.1
D/A	8,845,344	1.3	9,532,846	7.8
D/P	3,897,881	10.5	4,053,093	4.5
기타 무상	10,857,901	22.5	13,693,076	26.1
기타 유상	542,944	139.8	906,130	66.9
분할영수(지급)방식	15,133	-77.7	118,042	680.0

일람출급 L/C	32,461,516	12.4	34,671,320	6.8
기한부 L/C	51,293,697	26.4	57,024,547	11.2
임가공료지급방식의 위탁(수탁)가공무역	3,209,283	47.5	4,539,474	41.4
단순송금방식(T/T, M/T)	88,158,137	33.8	104,719,657	18.8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	215,534	13.6	222,21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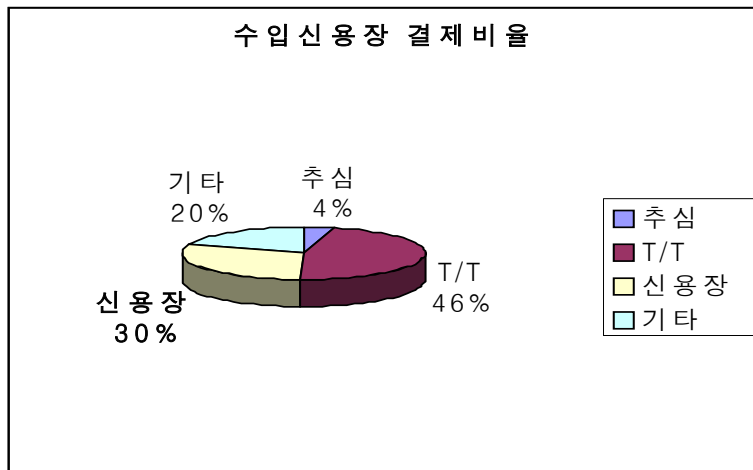
기간	2006. 01. ~ 2007. 05.			
	2006(01. ~ 12.)		2007(01. ~ 05.)	
결제형태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b>총 계</b>	<b>309,382,632</b>	<b>18.4</b>	<b>141,307,258</b>	<b>14.7</b>
사후 또는 동시송금방식(COD, CAD)	38,382,962	20.9	16,441,027	11.0
D/A	8,736,475	-8.4	3,728,377	2.0
D/P	4,390,735	8.3	1,933,106	0.1
기타 무상	14,549,127	6.3	6,659,997	10.4
기타 유상	1,110,463	22.6	325,620	-52.8
분할영수(지급)방식	127,855	8.3	7,802	-84.6
<b>일람출급 L/C</b>	<b>39,218,580</b>	<b>13.1</b>	<b>18,107,892</b>	<b>19.2</b>
<b>기한부 L/C</b>	<b>53,480,369</b>	<b>-6.2</b>	<b>23,567,729</b>	<b>3.5</b>
임가공료지급방식의 위탁(수탁)가공무역	5,891,039	29.8	2,920,877	30.8
단순송금방식(T/T, M/T)	143,195,660	36.7	67,499,610	21.1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	299,367	34.7	115,219	-7.4

자료 : 한국무역협회

대외무역과 관련된 국제대금결제방식을 표를 통하여 분석하여 보면 단순송금방식(T/T, Telegraphic Transfer)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신용장관련 대금결제가 2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2-3> 수입신용장 결제비율





자료 : 본인작성

<표 2-3> 수출품에 대한 신용장결제비율의 증감(단위 : 1,000달러)

기간	결제총액	신용장결제형태	점유율	증가율
2004년	253,844,672	54,540,388	21.49%	
2005년	284,418,743	56,674,563	20.00%	5.95%p
2006년	325,464,848	61,598,684	19.00%	15.35%p
2007년 상반기	145,756,949	26,536,944	18.20%	9.25%p

자료 : 본인작성

2004년 이후 향후 3년 반의 기간 중 통한 대외국 수출품에 대한 신용장결제비율의 증감을 <표 2-1> 을 통해 살펴볼 때 신용장결제비율이 다소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신용장결제방식의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금액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에 기인한다. 과거 중소기업은 소량소액거래일 때는 신용장관련 수수료의 부담, 절차의 복잡함 등의 이유로 단순송금방식(T/T)을 많이 이용하였다. 그러나 수출품목이 국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거래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수출대금회수에 리스크가 큰 단순송금(후수취)방식이나 서류인수방식(D/A)보다는 상대적으로 대금수취의 리스크가 작은 신용장방식결제를 선호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신용장결제방식은 그 특성상 수입상보다는 수출상(수익자)에게 더 많은 편익을 가져오고 수입상에게는 자금운용의 부담을 증가시

킨다는 점을 상기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이 과거 일방적인 buyer's market (매수자주도시장)에서 수출상이 대금회수의 결정권을 누릴 수 있는 seller's market(매도자주도시장)으로 상당부분 진전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4>대외국 수입품에 대한 신용장결제비율의 증감(단위 : 1,000달러)

기간	결제총액	신용장결제형태	점유율	증가율
2004년	224,462,687	83,755,213	37.31%	
2005년	261,238,264	91,695,867	35.10%	9.00%p
2006년	309,382,632	92,698,949	29.96%	6.90%p
2007년 상반기	141,307,258	41,675,621	29.49%	11.35%p

자료 : 본인작성

위의 <표 2-4 > 를 통해 대외국 수입품에 대한 신용장결제비율의 증감을 보면 2004, 2005년 양 2년간의 신용장결제금액은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다가 2006년에 약 -5,14%p 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상반기의 금액을 보면 하반기를 합쳤을 때 2004, 2005년의 비율과 비슷한 점유율을 보일 것이라 예측되는데 유독 2006년만 신용장결제비율이 감소했다. 이는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표 2-5> 평균환율변동표

평균환율변동표(전신환매입율)		
기간	환율(기준 : 전신환매입율)	
2004	8월	1.165.00
	12월	1.035.00
2005	8월	1.030.00
	12월	1.025.00
2006	8월	970.00
	12월	935.00
2007	8월	932.00
	12월	

자료 : 한국의환은행

환율의 변동폭이 커질 때 수출자는 선물환거래를 통하여 향후 외화대금수취에 대한 환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수입자는 원화강세가 지속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수급이나 유가 등의 단기적 상황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예측되면 결제일을 늦추지 않고 일람출급 방식으로 결제함으로써 추후 원화약세에 대비하여 최대한의 환차익을 올리려는 경향이 있다.

2005년 12월경의 대달러화 기준 환율은 USD1=KRW1.025.00이며 2006년부터 급격하게 원화가 절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2006년 동 기간부터 수입자는 신용장결제대금에 대하여 일람지급(at sight)방식은 확대하고 기한부 출급방식 대금결제를 축소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상반기부터는 오히려 Usance L/C 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수입자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화절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결제를 유보하여 환차손을 회피하였지만 2007년도에도 계속하여 원화강세가 유지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인정하고 원상태 결제방식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보인다.

표를 통해서 본바와 같이 신용장거래의 비중이 전체 무역결제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역관련업 종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서류에 대한 심사, 이에 따른 신용장대금의 지급에 최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은행의 외환계담당 종사자들은 신용장의 확실한 개념을 숙지해야 한다. 따라서 2007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 UCP600의 각 조항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 해석에 따른 법률적구속이나 판단기준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이나 대금지급지연등의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여 원활한 무역거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제3절 신용장거래의 한계

#### 1. 수입상의 정상물품 수취여부의 미확정성

수입상에 대한 한계로서 수입상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작성된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물품을 반드시 입수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신용장의 거래는 어디까지나 서류의 거래<sup>4)</sup>이므로 수출상이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저급한 상품이

---

4) Banks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to which the documents may

나 전혀 다른 상품을 선적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반드시 대금지급을 하게 되므로 수입상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방어수단이 없다.

## 2. 수출상의 성신행에 대한 수입상의 의도적인 불성실

수출상에 대한 한계로서 수입상이 신용장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수출상이 매매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서류상의 오류를 트집 잡아서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격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신용장이 조건부 지급확약서(conditional payment undertaking)이므로 단서조항에 따라서 지급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완벽한 독립지급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relate.

“은행은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며 그 서류와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UCP600 Article 5, Documents v .Goods, Services of Performance]

## 제3장 신용장통일규칙의 변천과정

### 제1절 각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배경

무역거래는 언급한 바와 관습과 체제, 언어, 종교 등을 달리하는 격지자간의 거래이므로 여러 거래위험이 상존할 수 있다. 또한 대금의 결제와 인도를 위하여 많은 기관과 단체, 복합적인 거래단계, 운송회사와 이와 연관된 부수적인 업체 등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이 대금결제와 적시인도(punctual delivery)라고 볼 수 있는데 신용장통일규칙은 대금결제에서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장방식을 통한 결제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무역거래의 여러 대금결제 방식에서 신용장결제방식은 모든 서류가 은행을 통하여 교환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이것을 취급하는 은행에 의하여 신용장상의 문구해석, 적용, 취급이 각 은행간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야기하고 이러한 분쟁에 따른 법정제소를 통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통일규칙의 제정을 확립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상호 투명한 규칙적용에 따라 거래의 안정성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은 오랜 기간에 걸쳐 보충, 보완해 오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Documentary Credits)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용장으로 결제를 행할 경우 관련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신용장을 취급하는 은행간의 운용과 해석에 있어서 통일된 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장결제방식의 거래가 국제간의 결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함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단체인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준거법(Applicable Law)으로서 당사간의 합의나 해당국가의 강행법과는 하위의 개념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여 신용장결제업무에 있어서 일차적인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ICC는 무역거래의 환경변화와 실제 일선에서 은행과 사용자간의 축적된 실무 사례와 대두된 문제점을 수용하여 탄력적으로 개정을 해오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실무의 관행, 상관습을 그대로 명문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행 및 상관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sup>5)</sup> 국제무역은 운송수단이나 거래물품, 관련거래당사자, 정보처리기술의 발달(전자무역을 통한 상품중개와 전자적으로 처

---

5) 전순환, 신용장통일규칙, 한울출판사 p.4

리되는 운송서류 등)과 운용의 다양성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므로 신용장 통일규칙(UCP)은 거의 10년마다 개정되어왔다. 각각의 UCP 개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3-1>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연혁

제·개정	년 도	효력발생시기	간행물번호
제 정	1933		Brochure No.82
제1차개정	1951	1952.1.1	Brochure No.151
제2차개정	1962	1963.7.1	Brochure No.222
제3차개정	1974	1975.10.1	Publication No.290
제4차개정	1983	1984.10.1	Publication No.400
제5차개정	1993	1994.1.1	Publication No.500
제6차개정	2007	2007.7.1	Publication No.600

## 1. 제1차 개정

UCP의 초안은 국제상업회의소가 1926년부터 용어의 국제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1933년 6월 3일 오스트리아 빈(Vienna)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 ; UCP)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 초안은 당시 세계무역의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신흥 중요무역국으로 부상하던 미국 등의 관행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주도적인 국가가 배제되고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한 신용장관행이 수용되어 국제적인 통일안으로 확립되기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기화로 1949년 2월 파리에서 개최된 ICC회의에서 통일규칙의 개정이 제안되었고 달라진 관행을 규범화하고 유럽과 미국의 관행을 조화시킴으로서 제1차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ICC는 신용장의 제창국인 미국의 참조규정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미국을 포함한 44개국의 일부은행이 이를 채택하였고 폴란드와 소련 등 공산국가 진영의 은행이 이를 묵시적으로 채택함에 따라 비로소 제1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적인 통일기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제1차 개정안은 3년에 걸친 작업 끝에 이루어졌으며 1952년 1월 1일부터 ICC Brochure No.151로 제정되고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되었다.

## 2. 제2차 개정

제1차 개정규칙은 이후의 적용에 있어서 적용상에 많은 문제점과 보완되어야 할 시행상의 의문점이 노출되어 제2차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1959년 제2차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1963년 4월 ICC의 제9차 멕시코총회에서 제2차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ICC Brochure No.222(1962 Revision)” 으로 공표되었다. 제2차 개정에서는 영국관행(London Practice)이 추가되었으며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도 이 규칙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영국 관행에 따라 해석기준의 엄격성이 강조되고, 미국식의 구체적·열거적인 표현보다 영국의 포괄적·추상적 표시방법이 도입되었으며 신용장통일규칙의 원문이 불어에서 영어로 채택되었다. 또한 제2차 개정의 특징으로는 전신(Telex)이 통신수단으로서 추가되었으며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상업화환신용장)” 에서 “Commercial(상업)” 을 삭제하여 “Documentary Credits(화환신용장)” 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 3. 제3차 개정

제2차 개정이후 복합운송의 발전에 따라 컨테이너운송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컴퓨터를 통한 업무 등의 확장으로 새로운 무역관행과 형태가 등장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ICC 은행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신용장거래관습의 변화, 모호하고 불명확한 문언을 명확히 할 필요성의 제기에 따라 이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제3차 개정규칙은 1975년 마드리드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고 197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3차 개정안에서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복합운송의 본질적기능과 실질적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운송인의 면책조항, 선하증권상의 갑판적유보부문언의 수리성, 부지약관면책조항(Unknown Clause)복합운송서류의 수리성 등을 각각 규정하였다. 제3차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복합운송서류에 대한 신설과 추가라고 할 수 있다.

#### 4. 제4차 개정

1980년도에 접어들면서 복합운송을 통한 컨테이너운송의 이용증대와 운송기술의 발전, 통신수단의 발달, 대량화물의 처리속도 증진, 서류업무의 전산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UCP에 관련된 매매계약운송 및 보험 등의 관련 국제규칙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안트워프규칙(York-Antwerp Rules for General Average, 1974)”을 비롯한 많은 국제규칙들이 등장하고 보완됨으로서 이러한 국제규칙과의 조화를 통하여 국제적인 통일관습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UCP를 개정하게 되었다. 제3차 개정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신수단과 운송기술·운용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에 따르는 무역관련서류가 간소화되면서 서류작성절차관행에 변화가 요구되었다. 본 개정안 160개에 달하는 국가와 그 속령지에 있는 외국환은행까지 모두 신용장통일규칙을 채택하게 됨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통일규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4차 개정은 1981년 12월에 개정시안(Document No.470/391)을 작성하여 수 차례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1983년 6월 7일 파리에서 개최된 ICC 제144차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고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인준을 거쳐 1984년 10월 1일부터 정식시행되었다.

#### 5. 제5차 개정

제4차 개정이후 제5차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10여년은 무역환경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과 복합운송, 전자무역 등의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졌다. 복합운송이 일반화되었으며, 전 세계 약 190개국 6,400여개의 외국은행은 세계은행간 금융전산망인 SWIFT(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를 통하여 신용장에 관한 모든 통신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또한 운송업체, 기업, 보험회사 등 무역관련업계에서도 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한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단체에서도 여러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는바, ICC 상관습위원회(Commercial Practices Commission)에서는 EDI방식에 의한 서류의 효력을 인정한 “Incoterms 1990”을 발효시켰으며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통일규칙(Unciform Rules for Sea Waybills)와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규칙(Rules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 이 국제해사위원회(CMI ; Comite Maritime International)에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발전 및 변화에 따른 실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ICC의 은행기술관행위원회(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는 UCP400을 운영함에 있어서 개선되거나 보충되어야 할 부분을 각국의 ICC 국내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수렴·종합하여 1990년 6월 함부르크 회의에서 개정작업을 거친 후 1993년 “UCP500 - ICC Publication No.500 ; UCP500)” 을 공표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 제2절 UCP600의 개정과정과 특징

### 1. 제6차 UCP600의 개정과정

UCP600은 ICC에서 1999년 UCP500의 개정필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 5월에 자문그룹을 결성하고 2년 6개월간의 초안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06년 5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은행위원회의 회의에 따라 은행위원회는 최종초안(Latest Draft)를 발행하였다. 이 최종초안은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2006년 10월 25일 파리에서 개최된 ICC 은행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식명칭은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s ; UCP, ICC Publication No.600” 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래의 신용장통일규칙은 정식영문명칭으로서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이고 이를 “화환 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라고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나 본 영문명칭에선 규칙에 해당하는 ‘Rule’ 이란 단어가 없었음에도 관습적으로 ‘통일규칙’ 이란 명칭을 사용해왔다<sup>6)</sup>. 그러난 이번 UCP600의 개정에선 제1조에서 신용장 통일규칙은 “규칙(rules)” 이라고 명시함으로써<sup>7)</sup> 국제규칙으로서의 명확한 기

---

6) UCP500 Article 1. Application of UCP - 제1조 통일규칙의 적용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shall apply to all documentary Credits (including to the extent to which they may be applicable, Standby Letter(s) of Credit) where they are incorporated into the text of the Credit. They are binding on all parties thereto,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ipulated in the Credit.

7) UCP600 Article 1 Application of UCP 600제 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UCP” ) are **rules** that apply to any documentary credit( “credit” ) (including, to the extent to which they may be applicable, any standby letter of credit) when the text of the credit expressly indicates that it is subject to these rules. They are binding on all parties thereto unless expressly

준임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UCP500의 개정이 개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지연되어 오는 동안 UCP500의 실무보완서(Practical Complement)의 역할을 하던 ISBP(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 국제은행표준관습)의 조항들을 상당부분 흡수하였다.

## 2. UCP600의 주요특징 및 신설규정

UCP600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의(제2조) 및 해석(제3조)을 포함하는 조문의 도입이다<sup>8)</sup>. UCP500의 조문을 축소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실무적인 관행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49개조항으로 이루어진 UCP500의 조문을 새롭게 정리하여 39개조항으로 구성하였다. UCP600과 eUCP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eUCP가 적용되는 경우, 그 규정이 UCP의 적용과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는 범위까지 우선한다<sup>9)</sup>. eUCP를 준거하도록 명시된 eUCP신용장은 UCP와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칙이므로 eUCP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UCP가 적용된다는 준거문언을 삽입하지 않아도 UCP에 적용된다. eUCP신용장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선 eUCP와 UCP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eUCP와 UCP가 해석상 차이가 있거나 상충될 경우에는 eUCP가 우선 적용된다. 또한 eUCP 신용장이 수익자가 종이서류 또는 전자기록의 제시 중 어느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자가 종이서류만의 제시를 선택하는 경우, UCP만이 그러한 제시에 적용되어야 한다<sup>10)</sup>. 전체적으로 큰 특징만 개괄하여 UCP600의 구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 2-1. 간결명확한 표현과 중복회피

종래 UCP500에서는 본문규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왔는바, UCP600에서는 규정을 변경하면서 UCP600의 본문규정이나 용어들이 일관성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용어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복사용을 회피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의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UCP500의 각 조항에 산재하여 중복사용되어 왔던 해석에 관한 조항들을 제2조(용어)를 신설하여 통합정리하였다.

---

modified or excluded by the credit.

8) "One of the structural changes to the UCP is the introduction of articles covering definitions(article 2) and interpretations(article 3).- the Introduction to UCP600, Gary Collyer, Corporate Director, ABN AMRO Bank,

9) [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1/eucp.asp](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1/eucp.asp)

10) eUCP 제2조 c 항

## 2-2. 지급관련 용어의 명확성규정

UCP500에서는 신용장과 관련된 매입이란 용어의 정의를 “일람지급(sight 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인수(acceptance)” 로 규정하고 있으나 UCP600에서는 UCP500에는 없었던 “지급(honour)” 이라는 용어를 새로이 도입하여 규정함으로써 상기 세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도록 하였다. 지급(honour)이란 용어는 미국통일상법전(UCC) 제5-102조의 규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는 세계무역질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측의 영향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CP600 제2조 제9항의 지급은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일람후 지급’, ‘연지급확약의 부담후 만기일지급’, ‘환어음의 인수후 만기일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UCP500 제10조 b 항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즉 “매입(Negotiation)이라함은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또는 선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제시에 따른 환어음 및/또는 서류의 지정은행에 의한 구매를 말한다<sup>11)</sup>” 고 하여 환어음제시에 대하여 은행이 다양한 자율적수단을 통하여 지급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반경을 확대하고 이의 처리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즉 지정은행은 환어음 및/또는 서류의 제시에 대하여 은행의 선지급 후 구매, 선지급 없는 선지급약정만으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2-3. 취소가능신용장의 규정삭제

UCP500 제8조 취소가능신용장의 규정<sup>12)</sup>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신용장의 발행은 취소불가능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신용장이 취소가능의 규정이 있음에도 취소불가능신용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할 때, 이러한 규정의 존속은 무의미하다고 본 것이다. 왜냐하면 취소가능신용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익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수익자를 보호할 수 없어 신용장의 기본기능을 역행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UCP600에서는 “신용장은 취소불능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sup>13)</sup>” 이라고 규정한 바,

---

11) Negotiation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s (drawn on a bank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and/or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UCP600 Article 2, 11.

12) A revocable Credit may be amended or cancelled by the Issuing Bank at any moment and without prior notice to the Beneficiary.- UCP500, Article 8. Revocation of a Credit

신용장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신용장의 규정보다 우선하는 관례로 볼 때 UCP600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취소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실무적으로는 분쟁발생의 가능성을 예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장 UCP600의 실무적용연구 및 문제점 분석에서 다룰 것이다.

#### 2-4. 선적기일, 환어음기일의 해석변경과 추가

UCP500에서는 선적일 또는 만기일의 표시에 있어서 ‘from’은 해당일을 포함하지만 ISBP상에선 환어음의 만기일에 사용된 from은 당해일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혼동을 빚어왔다. UCP600에선 ISBP상에서 별도로 해석되던 from을 본문상에 반입하여 통일된 일자해석을 정의하였다. 즉 “부터(from)”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 선적기간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해당일을 포함하지만 환어음의 만기일에 사용될 경우는 당해일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from과 after의 해석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between 및 before의 해석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사이(between)”이라는 단어는 당해일자를 포함하지만 “이전(before)”라는 단어는 당해일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2-5.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의 삭제

UCP500에서 은행의 신용장취급업무에 있어서 책임의 한계와 구분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은행의 책임부담을 강화시켰다. 즉 UCP500에서 사용되던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take reasonable care)”, “문면상(on its face)”,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 “지체없이(without delay)” 등과 같이 책임의 소재와 한계가 불분명한 추상적표현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문구로 인하여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은행의 입장으로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아무런 진정성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여도 외관상의 진정성만 충족시키면 이에 대한 은행의 면책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

13) A credit is irrevocable even if there is no indication to that effect.-UCP600 Article 3 Interpretation,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문면상이라는 용어를 UCP600에서는 제14조 a 항<sup>14)</sup>에서만 규정하고 UCP500에서 여러 조항에 걸쳐서 반복 사용되던 문면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이는 문면상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서류의 전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혼란이 야기되어 왔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의 규정을 모두 삭제할 경우 서류심사관행에 변화가 행해진 것으로 오인될 수 있고, 서류심사자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류의 정보, 통수 등의 심사를 위하여 제 14조 a 항에서만 존속시킨 것이다<sup>15)</sup>.

## 2-6. 서류심사와 통지기간의 단축

서류심사기간과 불일치서류에 대한 통지기간을 UCP500에서는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제7 은행영업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향유할 수 있다[UCP500 Article 13, b]” 고 규정하고 있다. UCP600에서는 이를 “제5 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로<sup>16)</sup>” 하여 기간을 단축함과 아울러 서류마감의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합운송의 발달과 컴퓨터통신망의 급속한 발전으로 많은 관련서류들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서류심사기간도 단축되어야 한다는 실무의견이 반영되었다.

수출지에서 물품이 선적되어 수입국의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되어 있지만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기간으로 인하여 개설의뢰인은 적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사용목적의 즉시활용에 장애가 있었다. 또한 수익자로서는 매입은행에 지불하여야 할 환가료의 부담으로 선적 후 자금의 융통이나 변제, 수출이익금의 활용에 금전적인 비효율성이 있었다. 서류심사기간이 종래의 7일에서 5일로 단축되어 2일 빨라지게 되므로 수익자는 수출대금의 빠른 회수, 환가료의 절감으로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의 회수기간이 짧아지게 되어 신속한 통관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14) a.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must examine a presentation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UCP600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15) 전순환, 신용장통일규칙, 한울출판사, pp.16~17

16)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shall each have a maximum of five - UCP600, Article14 b.

## 2-7. 연지급확약서에 대한 할인허용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C)에서 발행하는 연지급확약서(deferred payment L/C)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수출상이 만기일이전에 할인 등의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이 기존 UCP 상에 규정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적견해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연지급신용장하에서 이를 마치 매입신용장과 같이 간주하여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수익자에게 선지급한 후 만기일에 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허용되곤 하였다. 연지급신용장은 매수인은 유예기간 동안 마치 추심방식인 D/A처럼 서류상환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 없이 물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매함으로써 받은 대금으로 만기에 신용장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연지급신용장이라 하더라도 발행은행의 지급확약이 있으므로 D/A 보다는 안전하다 할 수 있겠지만 매수인이 물품수취 후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이미 1983년 제4차 통일규칙에 최초로 도입될 당시 은행들은 연지급신용장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매수인은 신용장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물품을 수령하므로 신용장에 따른 지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금지가처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을 금지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17)</sup>. 연지급신용장에 대한 매입을 구체적으로 허용한 UCP규정이 없었던 점에서 볼 때 매입을 행한 매입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지급거절에 대하여 개설은행에 항변하기 힘들고 이의 법리적인 해석과 판결이 해당국의 판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어왔다.

연지급신용장의 사용에 있어서 매입은행은 분쟁의 소지로 인하여 매입을 꺼리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수익자는 물품인도 후 만기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금융부담을 안게 되므로 실무업계에서 연지급확약서의 할인을 UCP에서 반영하여 명문화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는데, UCP600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규정으로 반영하였다<sup>18)</sup>. 이는 매입(negotiation)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한 것

17) 石光現,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에 대한 민사판례연구

18) a. Provided that the stipulated documents are presented to the nominated bank or to the issuing bank and that they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the issuing bank must honour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iv. acceptance with a nominated bank and that nominated bank does not accept a draft drawn on it or, having accepted a draft drawn on it, does not pay at maturity; ... iv. acceptance with a nominated bank and that nominated bank does not accept a draft drawn on it or, having accepted a draft drawn on it, does not pay at maturity; - UCP 600, Article 7 Issuing Bank Undertaking

으로 볼 수 있으며 신속한 대금활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수익자의 금융편의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연지급신용장은 매입이 아니라 할인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볼 때 지급확약수권이 없는 비지정은행의 매입이 있을 경우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에 대한 항변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앞으로 분쟁의 여지가 상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제3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2-8. ISBP 규정의 반영

UCP500은 개정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개정이 지연되어 온바 UCP의 개정없이 경과기간동안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서류심사실무처리에 대한 실무보완서로서 적용하던 ISBP의 규정을 UCP600에 반영함으로써 UCP와 ISBP의 일치성을 기하였다.

### ① ISBP 제45항 - UCP600 제3조 10항에 반영

환어음의 만기일에 사용된 “from” 과 “after” 란 단어가 환어음의 만기일에 관련되어 사용될 경우엔 언급된 날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sup>19)</sup>.

### ② ISBP 제60조 및 제61조 - UCP600 제14조 j 항에 반영

“수익자 및 발행의뢰인의 주소가 모든 명시된 서류상에 보이는 경우에는, 이들 주소는 신용장 또는 기타 모든 명시된 서류에 명기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언급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내에 있어야 한다.<sup>20)</sup>” 고 규정하였다.

### ③ ISBP 제32조 - UCP600 제17조 a 항에 반영

“신용장에 명시된 각 서류의 1통의 원본은 제시되어야 한다.<sup>21)</sup>” 고 규정하였다.

### ④ ISBP 제33조 c - UCP600 제17조 d 항에 반영

“신용장이 서류의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는

---

19) The words “from” and “after” when used to determine a maturity date exclude the date mentioned.  
-UCP600, Article 3, 10

20) j. When the addresses of the beneficiary and the applicant appear in any stipulated document, they need not be the same as those stated in the credit or in any other stipulated, but must be within the same country as the respective addresses mentioned in the credit.- UCP600, Article14.

21) a. At least on original of each document stipulated in the credit must be presented.- UCP600 Article 17, a

허용된다.<sup>22)</sup>” 고 규정하였다.

⑤ ISBP 제64조 - UCP600 제18조 a 항에 반영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작성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sup>23)</sup>

⑥ ISBP 제131조 - UCP600 제19조 b 항에 반영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기된 발송, 수탁 또는 선적지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양화 및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재적재를 말한다.<sup>24)</sup>” 고 규정하였다.

⑦ ISBP 제106조 - UCP600 제22조 a 항에 규정추가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하고 있는 것. 또한 양륙항은 신용장에 명기된 대로 항구의 구역 또는 지리적 지역으로 표시될 수 있다.<sup>25)</sup>” 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⑧ ISBP 제172조 - UCP600 제24조 a 항에 반영

“철도운송서류가 운송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도회사의 모든 서명 또는 스탬프는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 서류의 증거로서 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sup>26)</sup>”

⑨ ISBP 제171항 - UCP600 제24조 b 항에 반영

도로운송서류의 원본성, 철도운송서류의 원본성,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의 원본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⑩ ISBP 제91조, 제112조, 제135조, 제161조 - UCP600 제27조에 반영

“신용장에서 그 운송서류가 “무고장본선적재(clean on board)” 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가지는 경우에도, “무고장(clean)” 이라는 단어는 운송서류상에 보일 필요가 없다.<sup>27)</sup>” 고 규정하였다.

---

22) d. If a credit requires presentation of copies of documents, presentation of either originals or copies is permitted.-UCP600, Article 7, d

23) iii. must be made out in the same currency as the credit;..., UCP600, Article18, a

24) b.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ransshipment means unloading from one means of conveyance and reloading to another means of conveyance (whether or not in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during the carriage from the place of dispatch, taking in charge or shipment to the place of final destination stated in the credit.- UCP600, Article19, b

25) iii. indicate shipment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ated in the credit. The port of discharge may also be shown as a range of ports or a geographical area, as stated in the credit.-UCP600 Article22, a-iii

26) Any signature, stamp or notation of receipt of the goods by the agent must indicate that the agent has signed or acted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If a rail transport document does not identify the carrier, any signature or stamp of the railway company will be accepted as evidence of the document being signed by the carrier., UCP600 Article24, a

27) The word “clean” need not appear on a transport document, even if a credit has a requirement for that transport document to be “clean on board” .- UCP600, Article27



⑪ ISBP 제188조 - UCP600 제28조 f 항에 반영

“보험서류는 위험이 적어도 신용장에 명기된 대로 수탁 또는 선적지와 양륙 또는 최종목적지간에 담보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sup>28)</sup>” 고 규정하였다.

⑫ ISBP 제89항, 제110항, 제133항, 159항, 제177항 - UCP600 제31조 b항에 반영

“동일한 운송방식에서 2 이상의 운송수단상의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의 운송서류를 구성하는 제시는 그 운송수단이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는 경우에도 분할선적이 행해진 것으로 본다.<sup>29)</sup>” 고 규정하였다.

## 2-9. 원본서류의 인정범위에 대한 규정 삭제

UCP500에서 “선적(shipment)” 과 동일한 의미로 간주되어온 “본선적재 (loading on board” , “발송(dispatch)” , “수탁(taking in charge from)” , “우편수령일(date of post receipt)” , “운송을 위한 인수(acceptance for carriage)” , “접수일(date of pick-up)” 등은 각각의 운송수단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운송서류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UCP600에서는 선적이라는 표현의 해석기준을 삭제하였다.

## 2-10. 모든 관계당사자를 은행으로 변경

UCP500 제4조의 “모든 관계당사자” 를 “은행(banks)” 으로 변경하였다<sup>30)</sup>. 이는 신용장 취급을 은행의 고유권리로 한정하고 은행외 관련자들의 불필요한 해석이나 항변여지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 2-11.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부담시점 조항 신설

---

28)iii. The insurance document must indicate that risks are covered at least between the place of taking in charge or shipment and the place of discharge or final destination as stated in the credit.-UCP600, Article28-f

29) A presentation consisting of one or more sets of transport documents evidencing shipment on more than one means of conveyance within the same mode of transport will be regarded as covering a partial shipment, even if the means of conveyance leave on the same day for the same destination. , - UCP600 Article 31-b.

30) An issu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by and amendment as of the time it issues the amendment. .-UCP600, Article 10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는 시점부터 지급이행할 취소불능의 의무를 부담하며<sup>31)</sup>,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자행의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부터 지급이행 또는 매입할 취소불능의 의무를 부담한다<sup>32)</sup>” 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 2-12. 진정성여부에 대한 통지은행의 책임확대

UCP500에서는 신용장의 진정성(authenticity)확인에 있어서 통지은행이 외관상의 진정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아무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부담없이 면책되도록 규정하였지만, UCP600에서는 진정성의 하자 면책에 대하여 통지은행에게 다음과 같이 보다 엄격한 원칙을 규정하였다.

①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함으로써, 통지은행은 그 자신이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외관상의 진정성에 관하여 스스로 충족하였다는 것과 그 통지가 수령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제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3)</sup>”

②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함으로써 제2통지은행은 자신이 수령한 그 통지의 외관상의 진정성에 관하여 스스로 충족하였다는 것과 그 통지가 수령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제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4)</sup>”

위 두 개의 조항에 따라 통지은행의 진정성확인에 엄격성이 요구되는 바, 진정성확인에 대한 통지은행의 명백한 부주의 또는 태만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한 추후 그 하자가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의 한계범위에 대한 해석, 처벌 및 보상규정에 대하여 상당한 분쟁을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통지은행의 진정성확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 위험보존에 대한 수수료로 통지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바 본 조항의 신설로 야기될 문제에 대하여 제3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31) b. An issu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to honour as of the time it issues the credit.-UCP600, Article7 -b

32) b. A confirm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to honour or negotiate as of the time it adds its confirmation to the credit.- UCP600, Article 8-b

33)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or amendment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r amendment received.- UCP600 Article 9-b

34)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second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advice it has received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r amendment received.-UCP600 Article 9-c

## 2-13 신용장의 변경통지에 대한 자동승낙조건부 무시규정 신설

UCP500에서는 신용장조건변경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조건변경서를 발행하는 때부터 자행이 발행한 조건변경에 대하여 취소불능한 의무를 가진다. 확인은행은 그의 확인을 조건변경에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조건변경서를 통지한 때부터 취소불능할 의무를 진다. 확인은행은 조건변경서에 자행의 확인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개설은행과 수익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원신용장조건(또는 이미 조건변경이 이루어진 신용장)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에게 조건변경을 승낙한다는 통보를 할 때까지는 수익자를 위하여 계속 효력을 갖는다. 수익자는 조건변경을 승낙하거나 또는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그러한 통지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가 조건변경서를 승낙하지 않은 상태로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것은 수익자가 그러한 조건변경의 승낙을 통지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그 때부터 신용장은 변경되어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UCP600에서는 조건변경을 수취한 수익자에게에 대한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고 침묵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건변경이 유효하게 되고 수익자가 이에 구속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무시규정을 신설하였다<sup>35)</sup>. 즉 조건변경의 수락여부에 대한 수익자의 침묵을 조건변경의 유효사유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수익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 2-14 제2통지은행의 개념 신설

UCP600의 실시이전에 실무적으로 행해지던, 한국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은, 제2통지은행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제2통지은행도 통지은행과 같이 외관상의 진정성점검의무, 불확인 사항의 통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이는 통지은행이 제2통지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및 조건변경사항을 통지할 때 모든 조항들은 통지은행이

---

35) 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riginal credit (or a credit incorporating previously accepted amendments) will remain in force for the beneficiary until the beneficiary communicates its acceptance of the amendment to the bank that advised such amendment. The beneficiary should give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an amendment. If the beneficiary fails to give such notification, a presentation that complies with the credit and to any not yet accepted amendment will be deemed to be notification of acceptance by the beneficiary of such amendment. As of that moment the credit will be amended.- UCP600, Article 10, f

통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신용장 및 신용장의 조건변경 등의 제조조건이 통지시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이러한 통지를 행한 제2통지은행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통지은행이 신용장 및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함으로써, 통지은행은 그 자신이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외관상의 진정성에 관하여 스스로 충족하였다는 것과 그 통지가 수령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제조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6)</sup>”

## 2-15. 운송서류의 발행인 규정 신설

은행의 신용장심사와 취급에 있어서 엄밀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의 적용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선 상당한 대립과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동안 신용장의 실무보완서인 ISBP의 규정을 서류심사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신용장을 취급하는 은행원이 선하증권, 무역계약서 등의 전문적인 분야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의 진위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은행의 서류심사의 기준은 제시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서류의 일치성 심사는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그 제시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UCP600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a 항<sup>37)</sup>에 제시된 “문면상(on their face)”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면상이라는 용어는 “매매계약이나 선하증권 등의 전문가가 아닌 은행원이 서류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면상”의 의미는 서류의 “표면(face)”, 또는 “배면(reverse)”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sup>38)</sup>. 신용장의 대금상환에 대한 은행의 취급업무에 있어서 ICC 규칙에 따르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상

---

36) b.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or amendment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r amendment received. - UCP600, Article 9 Advising of Credits and Amendments

37) a.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must examine a presentation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38) Charles del Busto, Documentary Credits, UCP500 & 400 Compared, ICC Publication No.511, ICC Publishing S.A, 1993, p. 39, & 전순환, 신용장통일규칙, 한울출판사, p.128

환신용장이 발행되는 경우 각 은행에서 자의적으로 상환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상환신용장의 경우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한 ICC규칙(ICC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up>39)</sup>” 이 명기되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 2-16.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한 준거규정 신설

은행간 서류심사에 있어서 UCP500 제13조 a 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with reasonable care)” 및 “이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표준은행 관습에 의하여(by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e Articles)” 의 조항을 삭제하고 UCP600 제14조 a 항에서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발행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지여부(일치성)” 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그 제시를 심사하여야 한다<sup>40)</sup>” 고 규정하였다. 이는 UCP500의 보완실무서로 작용한 ISBP의 서류심사기준이 은행의 서류심사기준을 충족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UCP600에서 ISBP의 조항을 수용함으로써 해당 문언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 2-17. 서류상의 수익자 및 개설의뢰인의 주소 표기

ISBP 제61항<sup>41)</sup> 및 제62항<sup>42)</sup>의 규정을 반영하여 운송서류상의 수화인 또는 착

---

39) a. If a credit states that reimbursement is to be obtained by a nominated bank ("claiming bank") claiming on another party ("reimbursing bank"), the credit must state if the reimbursement is subject to the ICC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in effect on the date of issuance of the credit.-Article 13 Bank-to-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

40) a.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must examine a presentation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UCP600,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a

41) An invoice must appear on its face to have been issued by the beneficiary named in the credit. Telex or fax numbers, etc., forming part of the address, need not be present, or, if stated, need not be identical to that in the credit.- “송장은 반드시 신용장에서 지정한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되었음이 문면상 나타나 있어야 한다. 주소의 일부를 구성하는 텔렉스 번호 또는 팩스 번호 등은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또 이를 기재한 경우에도 신용장의 그것과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 -ISBP 제61항

42)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in the invoice must correspond with the description in the credit. There is no requirement for a mirror image. For example, details of the goods may be stated in a number of areas within the invoice which, when collated together, represents a description of the goods corresponding to that in the credit.- “송장의 물품명세는 반드시 신용장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화통지처 명세의 주소 및 연락처명세표기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수익자 및 발행의뢰인의 주소가 모든 명시된 서류상에 보이는 경우에는, 이들 주소는 신용장 또는 기타 모든 명시된 서류에 명기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언급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내에 있어야 한다.” 고 UCP600 제14조 j 항<sup>43)</sup>에 규정하였다.

## 2-18. 불일치서류의 거절통지횟수규정 신설

UCP500 제14조에서는 불일치서류와 그 통고에 있어서 통지의 형식과 요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거절통지횟수규정이 없었는데 UCP600에서 이를 추가하여 거절통지횟수를 1회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 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발행은행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시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1회만 통지하여야 한다<sup>44)</sup>” 고 구체적인 통지횟수를 밝히고 있다. 또한 거절통지를 수취하는 대상을 UCP500의 “은행 또는 수익자” 로부터 “제시인(presenter)” 으로 일관화하였다.

## 2-19. 불일치서류의 거절통지내용을 구체화

UCP500상의 불일치서류의 통고내용을 좀더 구체화하여 불일치서류에 대한 거절통지요건을 강화하였다. 즉 UCP600 제16조 항에서는

- “i. 은행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
- ii. 그리고 은행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게 되는 각각의 불일치사항;
- iii. a) 은행이 제시인으로부터 추가지시를 받을 때 까지 서류를 보관하고 있

---

다. 여기에 완전일치성의 어떠한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물품의 세부사항은 송장내의 여러 지면에 기재되어 상호 조합될 때에 비로소 신용장의 명세와 일치하는 물품명세가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43) j. When the addresses of the beneficiary and the applicant appear in any stipulated document, they need not be the same as those stated in the credit or in any other stipulated, but must be within the same country as the respective addresses mentioned in the credit. Contact details (telefax, telephone, email and the like) stated as part of the beneficiary's and the applicant's address will be disregarded. However, when the address and contact details of the applicant appear as part of the consignee or notify party details on a transport document subject to articles 19, 20, 21, 22, 23, 24, or 25, they must be as stated in the credit.-UCP600 Article14, j

44) c. When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or the issuing bank decides to 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it must give a single notice to the effect to the presenter. UCP600 Article16. c

다는 것;

b) 또는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를 수령하고 서류를 수령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또는 권리포기를 승낙하기로 합의하기 전에 제시인으로부터 추가지시를 수령할 때까지 개설은행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신설];

c) 또는 은행이 서류를 반송하고 있다는 것; 또는

d) 은행이 제시인으로부터 이전에 수령한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 이라고 규정하여 UCP500 제14조 d 항 ii 문의 “그러한 통고에는 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동은행이 서류를 제시인의 처분권에 일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제시인에게 송부하고 있는지도 언급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였다.

## 2-20. 보관중인 불일치서류의 반송규정 신설

보관중인 불일치서류의 반송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UCP500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UCP600에서는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발행은행은, 제16조 c항 iii호 (a) 또는 (b)에 의하여 요구된 통지를 행한 후에, 언제든지 제시인에게 서류를 반송할 수 있다.<sup>45)</sup>”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불일치서류의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통지한 후에는 언제든지 제시인에게 서류를 반송할 수 있도록 반송시점규정을 신설하였다.

## 2-21. 원본서류 및 사본서류의 허용범위 구체화

ISBP 32항 원본과 사본(original and copies) <sup>46)</sup>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원본과 사본서류의 인정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통수가 그 발행주체와 용도에 따라 통일되지 않음으로서 빚어지는 혼선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것이다.

---

45) e.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or the issuing bank may, after providing notice required by sub-article 16 (c) (iii) (a) or (b), return the documents to the presenter at any time.-UCP600, Article 16 Discrepant Documents, Waiver and Notice, e

46) 32. Each required document must be presented in at least one original, unless the credit allows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 as copies. The number of originals to be presented must be at least the number required by the credit, the UCP, or, where the document itself states how many originals have been issued, the number stated on the document.-ISBP 32, Originals and copies

UCP 600 제 17조 a 항에서는 “적어도 신용장에 명시된 각 서류의 1통의 원본은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원본으로 수리가 가능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UCP600 제17조 c 항

서류가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i. 서류발행인에 의하여 수기, 타자, 천공 또는 스탬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ii. 또는 서류발행인의 원본용지상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iii, 또는 제시된 서류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한,  
원

본이라는 명기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

UCP600 제17조 d 항에서는

“신용장이 서류의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는 허용된다”라고 규정하여 UCP500 제20조 c 항의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사본이라고 부기되어 있거나 또는 원본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서류를 사본으로서 수리하여야 하며, 사본은 서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 2-22. 상업송장상의 통화와 신용장금액의 통화일치규정 신설

ISBP 제64항<sup>47)</sup>을 반영하여 상업송장상의 통화는 신용장에 나타나 있는 통화와 동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sup>48)</sup>.

## 2-23. 운송서류관련 조항상의 범선적재금지 문언등의 삭제

해상운송수단의 급격한 발달과 컨테이너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일반화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외국간 무역거래에 범선이 더 이상 운항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여 범선적재에 대한 문언을 삭제하였다. 즉 UCP500에서 운송서류관련 - 복합운

---

47) 64. An invoice must evidence the value of the goods shipped. Unit price(s), if any, and currency shown in the invoice must agree with that shown in the credit. The invoice must show any discounts or deductions required in the credit. The invoice may also show a deduction covering advance payment, discount, etc., not stated in the credit.

48) A commercial invoice must be made out in the same currency as the credit; -UCP600 Article 18 Commercial Invoice, a



송서류, 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용선계약선하증권 - 의 조항에 제시되어 있던 “운송선박이 뜻에 의해서만 추진된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이 문구의 삭제는 UCP600 상의 모든 운송서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 2-24. 운송서류의 명칭

UCP600에서는 UCP5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서류의 명칭을 삭제하거나 추가함으로써 표기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반영함으로써 실무상의 혼동과 해석의 상이성을 제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운송서류의 명칭과 해석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첫째, UCP500에서는 복합운송서류를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라고 사용하고 있는바 여기에 실무적으로 운송서류에 많이 사용되는 “combined transport document” 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두 개의 명칭을 모두 수용하였다. 이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however named)”<sup>49)</sup>라는 표현을 보건대 서류의 명칭이나 표제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송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용장에서 복합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를 요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서류의 표제어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combined transport document 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운송서류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표제어에 구애 없이 수리한다는 의미이다.

신용장에서 “적어도 두 가지의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를 요구하는 경우 복합운송서류로서 UCP600 제19조에 적용되는 운송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② Combined transport document
- ③ Intermodal transport document
- ④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 ⑤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 ⑥ Inter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

49) a. A 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multimodal 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 however named, must appear to:... UCP600 Article 19 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a

둘째, 기존의 선하증권에서 사용되던 “해상”, 또는 “해양”이라는 용어와 “항구간 선적을 표시하는”이라는 어구를 삭제하고 UCP 제20조 a 항에서는 단순히 “선하증권”이라고만 표현하였다. 이는 선하증권의 발급은 당연히 물품의 인도가 해상운송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에 다시 해상, 해양, 항구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불필요한 중복으로 본 것이다.

셋째, 선하증권(Bill of Lading)과 용선계약선하증권의 확실한 구분을 위하여 용선계약선하증권은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선하증권이라고 정의하였다<sup>50)</sup>. 반면에 선하증권은 신용장에서 용선계약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하증권에는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1)</sup> 선하증권에 용선계약표시가 있는 경우 용선자와 선주간의 운송비지급여부에 대한 관계가 명확치 않은 경우 은행으로서 화물의 담보권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용선료가 선지급되지 않고 운송이 이루어질 경우 용선자가 선주에게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선주는 용선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적재된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sup>52)</sup>

넷째, UCP500에서는 “선장”, “선주”를 용선계약선하증권의 서명자자격으로 규정하였으나 UCP600 제22조 용선계약선하증권<sup>53)</sup> 조항에 “용선자”를 추가하였다. 또한 “대리인이 선주 또는 용선자를 대리하여 서명하는 경우에는 선주 또는 용선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다섯째, 환적금지부 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UCP600에서는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물품이 선화증권에 의하여 입증된 대로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래쉬선에 선적된 경우에는,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선화증권은 수리될 수 있다.<sup>54)</sup>고 규정하

---

50) a. A bill of lading, however named, containing an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must appear to:... UCP600, Article 22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51) ... contain no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UCP600 Article 20, a vi

52) 국제운송론, 오원석, 박영사 1997, p.213.

53) An agent signing for or on behalf of the owner or charterer must indicate the name of the owner or charterer.-UCP600, Article 22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54) ii. A bill of lading indicating that trans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 is acceptable, even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shipment, if the goods have been shipped in a container, trailer or LASH

었다. 과거 컨테이너운송이 활성화되기 전에 사용되던 재래선운송에선 환적을 할 경우 갑판적된 화물의 분실, 파손, 멸실 등을 우려하여 화주 또는 은행에서 갑판적화물에 대한 환적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고 단일의 운송인과 단일의 운송서류로 커버되는 일관운송을 추구하는 복합운송이 활성화됨에 따라 운송기간의 단축, 항구이용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환적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운송수단을 중간에 바꾼다하더라도 컨테이너운송의 특성상 철도, 선박, 도로운송이 이용된다 하더라도 표준화된 컨테이너 운송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물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따라서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운송이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복합운송일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따라 컨테이너를 개폐하지 않아도 되는 트레일러 및 래쉬선에 선적된다면 “환적될 것(transshipment will take place)”, “환적이 행해질 수 있다(transshipment may take place)” 이라는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은 수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해상운송이 대형 항구인 허브항을 모태로 하는 대형컨테이너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형항구간에 직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허브항에서 수심이 얕아 대형컨테이너선박이 입항하지 못하거나 대량하역작업시설을 갖추지 못한 작은 항만에는 feeder 선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feeder 선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컨테이너 적재화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업계관행상 이를 환적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UCP600의 규정에서 “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래쉬선에 선적된다면 환적될 것 (transshipment will take place), 환적이 행해질 수 있다(transshipment may take place)” 라는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은 수리된다고 하였으므로 화주 또는 은행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장상에 UCP600 제20조 c 항을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 2-24-1. 환적이 금지된 신용장조건에서의 환적에 대한 분쟁사례<sup>55)</sup>

수입상 A는 B은행을 통하여 운송서류로서 해상선하증권(Ocean Bill of Lading)을 요구하면서 환적을 금지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매입은행으로부터 송부된 B/L에는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환적될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 경우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면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고 있음

barge as evidenced by the bill of lading. UCP600 Article 20 Bill of Lading, c ii  
55)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trade\\_biz/n\\_trade\\_biz\\_L\\_viw.jsp?#0](http://www.kita.net/trade_biz/n_trade_biz_L_viw.jsp?#0)

에도 불구하고 환적을 표시하고 있는 B/L은 수리가능한가?

### (1) 결론

만약 신용장에서 운송서류로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면서 환적을 금지하였더라도, 화물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LASH barge 등에 적재되었다는 표시가 있는 전운송이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커버되면 환적될 것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수리할 수 있다.

### (2) 해설

해상운송에서 환적(transhipment)이란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 해상운송 도중에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풀어 다시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UCP500 제23조 b항 [UCP600 제20조 동일적용]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ranshipment means unloading and reloading from one vessel to another vessel during the course of ocean carriage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ipulated in the credit.

(본 조항에서 환적이란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 해상운송 도중에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풀어 다시 적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환적의 문제점

환적은 물품을 이적 및 재적재 하는 것이므로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환적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될 염려가 많으므로 화물소유자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전체 운송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게 된다.

둘째, 환적은 구간별로 다른 운송인이 운송을 담당하므로 위험부담자가 상이하  
여 화물소유자가 배상을 청구할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4) 신용장통일규칙 23조(d)(i)의 해석[UCP600 제20조 동일적용]

화물이 컨테이너에 내적 되면 환적 중에 손상을 입을 염려도 거의 없고, 컨테이  
너 화물은 기계장치로 환적 하므로 시간이 지체될 우려가 없으므로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화물이 컨테이너에 내적 되고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이  
전항정을 커버할 경우에는 환적이 허용된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UCP500 제23조 d항 [UCP600 제20조 동일적용]

Even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shipment , banks will accept a bill of  
lading which:

i. indicates that transshipment will take place as long as the relevant  
cargo is shipped in a Container(s), trailer(s), and/or "LASH" barge(s) as  
evidenced by the bill of lading, provided that the entire ocean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bill of lading.

ii. incorporates clauses stating that the carrier reserves the right to  
tranship.

(비록 환적이 신용장 조건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을지라도, 은행은 다음 선하증  
권을 수리한다.

i. 전체 해상운송구간이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으로 커버될 때 관련 화물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래쉬바지에 선적되면서 환적될 것이라는 표시가 있는 서

류 및/또는

ii.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한 조항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

**(5) 항공운송에서의 환적의 뜻**

항공운송에서 환적이란 신용장에서 명시된 출발공항으로부터 도착공항까지의 운송중 한 항공기로부터 다른 항공기로 화물을 풀어 다시 적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6) 항공운송장에서 환적을 표시하고 있는 예**

Airport of Departure and requested routing			
Vancouver to Frankfurt / Main Germany			
To	By first Carrier Routing and Destination	To	BY
YYZ	AC YVR/YYZ/FRA	FRA	CA
Airport of Destination	Flight Date	Flight Date	
Frankfurt / Main Airport	AC580/9APR	CA872 / 10 APR	

이 항공운송장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비행번호와 비행일이 표시되어 있고 "공로 및 도착지"란에 추가도시 코드 즉, YYZ(토론토)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Vancouver에서 Airline Canada의 항공기에 탑재되어 Toronto에서 환적 되어 China Airline의 항공기에 의하여 Frankfurt의 Main공항까지 운송될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여기서 AC는 최초의 운송인인 Airline Canada의 약자이고 CA는 China Airline의 약자이다.)

**(7) 신용장통일규칙 UCP 제27조 c항의 해석[UCP600 제23조 동일적용]**

항공운송은 직항운송이 많지 않는 관계로 기본적으로 환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전체 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항공운송서류로 커버되면 환적이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환적을 금지하려면, 신용장에서 신용장 통일규칙 제27조 c항의 적용을 배제시키면서 환적을 금지시켜야 한다.

## (8) 실무상유의점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면서 환적을 금지한 경우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이 전항정을 커버하면 환적이 허용된다. 한편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환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환적이 허용된다.

### 2-25. 운송서류상의 무고장 표시와 운임선지급 운송서류 규정의 삭제

신용장이 무고장운송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운송서류상에 반드시 “무고장(cle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ISBP의 제91항, 제112항, 제135항, 제161항의 무고장서류에 관련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운송서류상에 물품의 상태에 관한 아무런 표현이 없다면 이는 물품이 이상 없이 적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굳이 무고장이라는 표현을 중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운임의 선지급유무에 대한 내용은 이미 운송서류에 기재되어 발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UCP500 상의 “운임 선지급될 수 있음(freight prepayable)”, 또는 “운임 선지급 되어야 함(freight to be prepaid)”의 조항을 삭제하였다. 복합운송의 발달, 특히 항공을 이용한 특송화물이 증가함에 따라 화주와 운송인간에 다양한 운임지급정산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화주들은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운송인과는 개별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건건으로 운송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던 운임의 지급여부를 복합운송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신용장에서 비록 운임이 선지급(freight prepaid)되었다는 표시가 기재된 특송화물수령증(courier receipt)을 요구하더라도, 운임선지급여부의 표기가 기재될 필요가 없다.

#### 2-25-1. Clean B/L을 foul B/L로 만들지 않는 B/L상의 부가조항의 분쟁사례<sup>56)</sup>

56)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trade\\_biz/n\\_trade\\_biz\\_T\\_viw.jsp?cd=1201&seq=193&no=2&layout=&cnt=2](http://www.kita.net/trade_biz/n_trade_biz_T_viw.jsp?cd=1201&seq=193&no=2&layout=&cnt=2)

수입상 A는 거래은행을 통하여 미국의 수출상에게 clean on board ocean B/L을 요구하는 L/C를 개설하였는데 보내진 서류를 개설은행으로부터 인도 받아 점검해 본 결과 B/L상에 “second-hand packing materials used” 라는 부가조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입상 A는 그러한 부가조항이 있는 B/L은 clean B/L이 아닌 foul B/L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설은행에 매입은행으로 부도통보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경우 수입상 A의 주장은 옳은 것인가?

본 사례 B/L상 부가조항은 운송서류를 “고장부” 로 만들지 않으므로 수입상이 foul B/L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수익자는 무고장운송서류(clean transport document)를 제시하여야 한다(UCP500 제32조, UCP600 제27조). 판례에서도 신용장에서 B/L을 요구한 경우에는 clean B/L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sup>57)</sup> Incoterms 2000에서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고장(운송)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B/L이 clean B/L이냐를 둘러싸고 신용장 관계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clean B/L의 의미에 관하여는 이론적으로 정설이 없고 신용장통일규칙과 법조계의 견해가 약간 다르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관계 당사자들이 관련 학설·판례 및 국제상업회의소의 견해를 모르고 있는 데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무자가 clean B/L의 의미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 1.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견해

운송인은 운송서류상 상품명세를 기재하는 난에 추가적인 단서조항을 기입하거나 고무인을 찍는 경우가 있다. 신용장 통일규칙 32조에 따라 화물 또는 포장에 하자가 있음을 명백히 표시하는 부가조항 또는 단서가 있는 운송서류는 그

---

57) British Imex Industries Ltd. v. Midland Bank Ltd.[1959] 1 Q.S.542, 551



운송서류가 Clean이나 아니냐를 결정할 때 상당히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화물 또는 포장의 하자과 관련이 없는 부가조항 또는 단서는 운송서류를 “고장부(unclean)” 로 만들지 않는다.

운송인은 운송서류 문면상의 “Shipper's load and count” 등과 같은 부지약관 (unknown clause)이나 선적 또는 양륙에 관한 추가표시나 운송계약에 관한 부가조항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화물 또는 포장의 하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송서류를 “고장부” 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조항이 신용장 통일규칙의 다른 조항 또는 신용장의 조건과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오랫동안 국제상업회의소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에 Clean B/L에 대하여 많은 질의가 들어왔는데 이에 대하여 이 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 1) 관련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

(i) 본 위원회는 특정형태의 물품 (글리세린)에 관계되는 다음의 약관이 있으면 이 B/L은 “고장부” 가 되어서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수리가 불가능한가를 고려해 달라는 질의를 받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Cargo to be loaded and pumped in and of vessel's tanks by, and at the expense, risk and peril of shippers or consignees with pumps, hoses, and power supplied by shippers or consignees. The cargo to be placed alongside receiving vessel and taken away as required by her. Vessel's tanks without heating coils therefore if any heating required on discharge same to be supplied by consignees at their risk, peril and expense, consignees to clean tanks master's satisfaction at their risk, peril and expense.”

The Commission decided that such a clause did not render a clean bill of lading “unclean” 58)

---

58) Meeting on 14 Mar. 1977 ICC Documents 470/304, 470/309

“화물은 선적인 또는 하수인이 제공한 펌프, 호스 또는 동력에 의해서 선적인 또는 하수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선박의 탱크 안과 밖으로 적재 및 양륙된다. 화물은 적재선박의 선측에 내려지고 선박에서 필요한 대로 처리된다. 선박 탱크에는 가열코일이 없으므로 양륙시에 가열이 필요하다면 하수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수인은 자기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선장이 만족할만하게 선박탱크를 청소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는 그러한 약관이 있더라도 무고장 선하증권이 “고장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ii) 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약관(또는 유사한 약관)이 있으면 선하증권이 "고장부"가 되어서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수리가 불가능한지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Carrier not to be responsible for quality or quantity ----- weight, measure, marks, number, quality, contents and value although declared by the shipper in the bill of lading are to be considered unknown unless the contrary has been expressly acknowledged and agreed to.

The Commission decided that such a clause did not render a clean bill of lading "unclean"<sup>59)</sup>

“반대표시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동의되지 않는 한 운송인은 품질 또는 수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B/L에는 선적인이 주장하는 대로 기재되어, 운송인은 중량, 용적, 마크, 품질과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위원회는 그러한 약관이 있더라도 무고장 선하증권이 "고장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iii)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포장에 관한 면책약관이 있는 선하증권이 고장부 선

---

59) Meeting on 14 Mar. 1977 ICC Documents 475/304, 470/309

하중권으로 간주되는가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The goods having been packaged in paper and/or a plastic bags. The carrier's rights and immunities in the event of loss or damage of the goods as a result of the nature of that packaging are hereby expressly reserved." The Commission was asked whether the insertion of a clause such as the above could be considered as expressing the carrier's intention of drawing the attention of all the parties concerned to the fact that, in his opinion there was a risk due to the packaging of the goods and that the method of packaging used was unusual and unsatisfactory.

The Commission decided that in so far as the clause referred to did not expressly declare a defective condition of the goods and/or the packaging, it did not justify rejection of the documents as "unclean."<sup>60)</sup>

“화물이 종이 및/또는 플라스틱 부대에 포장되어 있음. 운송인은 그러한 포장 재료 성질의 결과로 화물이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 권리와 면책을 명백히 유보함.” 본 위원회는 운송인이 상기와 같은 약관을 삽입한 것을 화물 포장에 위험이 있고 사용된 포장방법이 비정상적이고 불만족스럽다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관계 당사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받았다.

본 위원회는 언급된 약관이 상품 및/또는 포장의 하자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고장부” 라는 이유 때문에 수리거절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 2) 운송서류에 표시되는 부가조항

여기서는 운송서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부가조항의 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 ( i ) 운송서류를 “고장부” 로 만드는 부가조항

---

60) Meeting on 8 Mar. 1976 ICC Documents 470/273, 470/278

다음의 부가조항은 UCP500 제32조, UCP600 제27조 에 따라 운송서류를 “고장부” 로 간주하게 한다.

- . Contents leaking(내용물 누출)
- . Packing soiled by contents(포장이 내용물에 의해서 오염)
- . Packing broken/holed/torn/damaged(포장손상)
- . Packing contaminated(포장오염)
- . Goods damaged/scratched(상품손상/긁힘)
- . Goods chafed/torn/deformed(상품찰상/찢김/변형)
- . Packing badly dented(포장이 충격을 받아서 움푹 들어감)
- . Packing damaged-contents exposed(포장손상-내용물 노출)
- . Insufficient Packing(불충분한 포장)

(ii) 운송서류를 “고장부” 로 만들지 않는 부가조항

국제상업회의소는 “Clean Transport Documents” (Publication No 473)라는 소책자와 Incoterms 1980에서 다음의 부가조항은 운송서류를 "고장부"로 만들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 . Second-hand packing materials(중고 포장재료 사용)
- . Old packing materials(낡은 포장재료 사용)
- . Reconditioned packing materials(수리된 포장재료 사용)

어떤 상품은 포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적될 것이다. 운송서류에 상품이 포장되지 않았다는 부가조항(예를 들면, Unprotected, Unboxed, Partly protected)이 있으면 은행에서 수리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위의 소책자에서 그러한 부가조항 자체가 운송서류를 “고장부” 로 만들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신용장에서 그러한 부가조항이 수리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운송서류에 “Repaired/mended/resewn/repacked” 와 같은 부가조항이 표시된 것은 외관상의 하자가 수선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서류의 “무고장성”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iii) 수량에 관련된 부가조항

운송서류에 가끔 수량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부가조항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One bag in dispute - if on board to be delivered” (한 부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데 만약 선적되었다면 양륙지에서 인도하겠다.)

이 부가조항이 신용장의 다른 조건과 관련하여 수리거절 된다 할지라도 운송서류를 “고장부” 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 부가조항은 수탁 또는 선적된 정확한 수량에 관하여 선적인과 운송인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L/C에서 분할선적이 금지되지 않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한 부대를 제외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은행은 이 운송서류를 수리할 수 있다.

## 2-26. 보험서류

UCP500 의 제34조, 제35조와 제36조에 걸쳐서 규정되어 있던 보험서류에 대한 관련규정을 개정 UCP600의 제28조에 통합하여 간략화하였다.

UCP500상의 보험서류의 발행인 및 서명권자로서 보험회사, 보험업자 또는 이들 대리인외에 “대리업자(proxies ; 수입인)” 를 추가하였다<sup>61)</sup>. 또한 UCP500에서

---

61) a. An insurance document, such as an insurance policy, an insurance certificate or a declaration

는 “보험서류상에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가 표시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규정에 “보험담보의 금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ISBP 제188항<sup>62)</sup>의 위험담보구간을 적용하여 UCP600 제28조 f 항에 보험담보구간의 표시의무를 신설하였다. 즉 보험서류에 표시되어야 하는 위험담보구간은 신용장에 명기된 수탁 또는 선적지에서 양륙 또는 최종목적지간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보험서류에 관한 ISBP의 일부규정은 UCP500의 기존규정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중복규정은 ISBP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ICC는 강조를 위하여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여 의도적인 중복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sup>63)</sup> 그러나 ISBP에서는 UCP와의 적용순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보험서류에는 UCP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전제하여 이미 UCP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복규정은 오히려 ISBP의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sup>64)</sup> UCP600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UCP500과 ISBP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중복조항들을 통합하거나 삭제하여 보험서류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서류에서 담보가 선적일보다 늦지 않은 일자로부터 유효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보험서류의 일자는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아니된다.<sup>65)</sup> 이는 보험자가 실제 선적일과 보험계약 체결일자사이의 공백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CIF 또는 CIP 의 조건하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매도인이 계약자임과 동시에 피보험자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선적하기 전까지의 손해에 대해서 계약자임과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어 피보험이익을 청구하게 된다. 본선선적이 이루어지면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의 청구권리는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위 인코텀즈 가격조건에서 매도인이 보험료의 지급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

---

under an open cover, must appear to be issued and signed by an insurance company, an underwriter or their agents or their proxies. Any signature by an agent or proxy must indicate whether the agent or proxy has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insurance company or underwriter.- UCP600 Article28 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

62) The insurance document must show that risks are covered at least between the point of shipment, dispatch or taking in charge and the point of discharge or final destination as required by the credit.-ISBP 제188항

63)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ISBP), p.8.

64) 이상훈, 신용장거래에서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의 적용, 한국학술정보, p.207

65) e. The date of the insurance document must be no later than the date of shipment, unless it appears from the insurance document that the cover is effective from a date not later than the date of shipment. UCP600 Article28, e 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

의 구내에서 인도지점까지의 위험구간에 보험부보를 하지 않고 단지 매수인을 위하여 선적 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보험구간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상기 조건에 대하여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에서 본선적재운송서류를 요구하는 CIF 조건의 경우에는 늦어도 본선적재일까지, 발송 또는 수탁운송서류를 요구하는 CIP조건의 경우에는 늦어도 발송인 또는 수탁일까지 매도인이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운송서류는 물품의 선적일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운송서류의 발행일 보다 늦은 발행일을 기재하고 있는 보험서류는 선적일과 보험계약일 사이의 공백기간에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험서류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급보험의 명시적인 문언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이, 보험서류상에 보험담보가 선적일(선적일보다 늦지 않은 일자)로부터 유효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선적일보다 늦게 기재된 보험서류도 수리될 수 있다.<sup>66)</sup>

협회적하약관의 운송조항(transit clause)<sup>67)</sup> 및 소급조항(lost or not lost clause)에 따라 보험서류의 발행일자가 실제 선적일보다 더 늦은 날짜에 발행된 경우라도 부보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청구하여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소급조항 및 운송조항 등은 각국의 보험약관이나 법제 및 관습의 차이로 인하여 이의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손해보상에 대한 제한조건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소급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선적일보다 늦게 발행된 보험서류를 은행은 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소급조항에 대해 예외가 인정되려면 신용장이 선적일보다 늦은일자의 보험서류를 인정하거나 또는 담보가 전운송기간동안 유효하다고 보험증권 자체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그와 같이 담보를 선적일(본선적재, 발송 또는 수탁일)까지 유효하게 소급시키는 경우이다.<sup>68)</sup> 선적일보다 늦게 발행된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보험서류가 수리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66) 신용장통일규칙, 전순환, 한울출판사 2007, pp252~265

67) “보험은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날 때부터 개시하고, 통상의 운송과정(ordinary course of transit)에 있는 동안 계속되며,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도착지이건 목적지이건을 불문하고 통상의 운송과정 이외의 보관이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선택한 기타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화물이 최종양륙항에서 본선으로부터 피보험화물의 양륙을 완료한 후 60일이 경과한 때 중의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한 때에 종료된다.” - 구협회적하약관 제1조의 창고간 조항(warehouse to warehouse clause).

68) Dennis Badger and Geoffrey Whiethead, Elements of Cargo Insurance, Woodhead-Faulkner Ltd., 1983, p.11

첫째, 신용장상에 선적일보다 더 늦은 발행일을 기재하고 있는 보험서류가 제시되더라도 관계없다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

둘째, 선적일보다 빠른 일자로 예정보험에 가입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보험증명서가 제시된 경우,

셋째, 운송조항이나 소급조항과는 별도로, 담보가 늦어도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유효하다고 표시한 보험서류가 제시된 경우이다.

## 2-27. 과부족용인조항의 일부삭제

UCP500에서 사용되었던 과부족용인조항과 관련된 표현에서 신용장금액, 단가, 수량 등의 과부족을 나타낼 때 그동안 실무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던 라틴어 “circa(대개)” 를 삭제하였다. 또한 UCP500과 ISBP 상에 신용장금액보다 5% 낮게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이를 허용해온 실무적인 관행을 반영하여 UCP600 제30조 c 항에서는 신용장이 특정과부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어음금액이 신용장금액보다 5% 부족하게 발행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는 ICC에서 UCP500 제39조 b 항에 따라 5%의 범위내에서 부족한 수량을 선적하고 환어음 금액도 신용장금액보다 부족하게 발행한 경우, UCP500 상에는 이러한 불일치된 금액을 허용하지 아니한 근거가 없다고 규정<sup>69)</sup>하고 있는 바 이를 UCP600 상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 2-28. 송달중인 서류의 지연 또는 분실에 대한 면책

UCP500에서는 지연, 분실, 훼손 또는 기타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은행의 면책범위를 신용장에 명기된 요건에 따라 송달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였지만, UCP600 제35조에서는 “은행이 신용장에 그러한 지시가 없으므로 인도서비스의 선정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행했을 경우” 라는 어구가 추가됨으로써 신용장에 지시가 없었음에도 은행이 이를 자발적으로 행했을 경우까지도 적용함으로써 은행의 면책범위가 확대되었다.<sup>70)</sup> 또한 UCP400에서 도입되어 UCP500까지도 적용되던 전기통신의 송신(telecommunicatio)이라는 어구를 삭제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문서가 전자문서화 되어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

69) ICC Publication 632, R.237

70) 전순환, 신용장통일규칙, 한울출판사 p.35



환경을 감안하여 전기통신보다는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의 비중이 확대·발전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2-29. 송달중의 서류분실에 대한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지급이행의무 신설

개설은행은 신용장통지의무와 관련하여 신용장의 발행은 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위임계약 즉, 의뢰인의 위임신청에 의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므로 제3자인 수익자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sup>71)</sup> 왜냐하면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무사히 도달되어 수익자가 신용장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을 때에만 대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정확히 도달되었는가의 여부는 개설은행의 책임바깥이다. 그러나 신용장에 근거하여 인수지급·매입을 행한 은행이 서류송달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만 개설은행에 신용장대금에 대한 상환을 요청할 때는 분실된 서류가 정확히 신용장조건에 합치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점과 아울러 당해 서류는 정규의 절차로 송달했음을 입증시켜야 할 책임<sup>72)</sup>이 있었다. UCP600에서는 본조항에 대하여 지정은행이 제시가 일치한다고 결정하고 서류를 발송하는 중에 분실되더라도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지정은행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할 의무, 또는 그 지정은행에게 상환할 의무를 규정을 신설하였다<sup>73)</sup>.

## 2-30. 불가항력조항에 폭력주의의 행위 추가

은행의 업무중단사유로 발생하는 은행의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대한 면

---

71)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2004, p.84

72)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2004, p.86

73) If a nominated bank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is complying and forwards the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whether or not the nominated bank has honoured or negotiated, and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must honour or negotiate, or reimburse that nominated bank, even when the documents have been lost in transit between the nominated bank and the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or between the confirming bank and the issuing bank.-UCP600 Article 35 Disclaimer on Transmission and Translation,

책범위에 “폭력주의의 행위(acts of terrorism)” 를 추가하였다. 즉 “은행은 천재, 폭동, 소요, 반란, 전쟁, 폭력주의의 행위에 의하거나 또는 동맹과업 또는 직장폐쇄에 의하거나 또는 기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은행업무의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sup>74)</sup>” 고 규정하였다. 이는 미국의 9.11 테러사건을 시발로 하여 점증하고 있는 국제테러가 큰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위협요인의 새로운 형태로 간주하여 면책조항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 2-31. 제2양도은행의 규정신설과 “양도가능” 문언표시 삭제

UCP500에 없던 제2양도은행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양도은행은 원수익자(first beneficiary)의 요청에 따라 양도를 행하는 바 이를 원래는 신용장에서 양도를 수권받은 양도은행이 행하였으나 UCP600에서는 제2 양도은행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이에 따라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75)</sup> 대부분의 신용장거래가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한국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본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UCP500에서 양도가능신용장의 양도규정에 관한 표현에 있어서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하여 양도가능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양도될 수 있다. 분할가능(divisible), 분절가능(fractionable), 할당가능(assignable), 및 이전가능(transmissible)이라는 용어는 신용장을 양도가능한 것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이는 무시된다<sup>76)</sup>”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항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UCP500에서는 양도가능한 신용장의 전제조건으로서 오직 transferable 의 문언만 인정하고 분할가능(divisible), 분절가능(fractionable), 할당가능(assignable), 및 이전가능(transmissible) 이란 표현이 사용되었을 경우는 무시한다 하여 확실한 표현의 한계를 두었지만 UCP600에서 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분할가능(divisible), 분절가능(fractionable), 할당가능(assignable), 및 이전가능(transmissible)의 표현도 양도가능한 표현으

74) A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arising out of the interruption of its business by Acts of God, riots, civil commotions, insurrections, wars, acts of terrorism, or by any strikes or lockouts or any other causes beyond its control.- UCP600 Article35 Force Majeure

75) UCP600 Article b, ii

76) UCP500 Article 48 b

로서 해석되고 용인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과 혼동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본 조항이 사용되었을 경우 명백히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transferable 이외의 용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상의 혼란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UCP600이 활용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부칙이나 판례등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정립이 될 것이다.

## 제4장 UCP600의 실무적용 및 문제점 분석

### 제1절 취소불능성과 취소가능성에 대한 문언삭제에 대한 분쟁우려

무역대금의 결제가 신용장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신용장금액에 대한 수익자의 수취권리는 신용장에서 제시되는 요건에 따라 일치하는 서류를 개설은행에 제시할 경우에 이루어진다. 또한 통상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이라 하면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을 일컫는바 이는 신용장은 일단 개설되면 관련당사자 즉 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의 동의 없이는 취소될 수 없다. 수익자와 개설은행간의 법률관계는 신용장이 취소가능신용장이냐 취소불능신용장이냐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sup>77)</sup> 취소불능신용장일 경우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담보로 하고 개설은행이 지급에 대한 법률적책임을 지지만 취소가능신용장일 경우는 은행이 지급, 어음매입 등 어떠한 확정적 의무부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sup>78)</sup> 는 취소가능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s)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수익자(수출자)는 신용장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신뢰하고 신용장조건에 따라 원재료의 구입, 제조시설의 준비 등 물품출하를 위한 사전작업을 준비하게 되므로 신용장이 취소될 경우는 경제적, 시간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다. 신용장에 “revocable” 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취소불능 또는 가능에 대하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가능으로 간주된다<sup>79)</sup>.

수입자가 취소가능신용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시황의 변동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신용장의 취소 또는 변경을 통하여 손실을 회피하려하기 때문이다. 취소가능신용장은 직접적인 관련 당사자의 합의 없이 취소가 가능하므로 수출자로는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이 없는 취소가능신용장은 수익자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UCP600에서는 “신용장은 그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취소불능이며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이행할 개설은행의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을 말한다”<sup>80)</sup>, “신용장은 취소불능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이다<sup>81)</sup>” 라고 각각 규정하여 UCP500 제8조, 신용장의 취소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

77) 최종수 외, 국제무역결제론, 삼영사 1998, p.105

78) 서울고등법원 1979.12.4. 선고, 76나3205 판결

79) a. A revocable Credit may be amended or cancelled by the Issuing Bank at any moment and without prior notice to the Beneficiary. -UCP500 Article 8

80) UCP600 Article 2

였다. 이에 따라 개설은행이 수익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취소가능신용장은 더 이상 신용장으로서의 효용성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은 강행규칙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임의규칙이므로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취소불가능이라고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용장상에 “UCP600에 따름” 또는 “취소불가능” 이라고 명백히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러시아 등의 나라에선 취소불능이라고 표시되지 않았다면 취소가능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나라로부터 신용장을 통지받을 경우 취소가능여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취소가능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UCP500 제8조에 따른다고 명기되어 있거나 취소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을 경우는 신용장의 취소불가능성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수취한 신용장의 문구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함정문구의 삭제, 또는 변경을 통하여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1. 신용장의 취소불가능표현의 부재로 인한 분쟁사례와 분석<sup>82)</sup>

---

한국의 A사는 미국에서 옥수수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 C은행에서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을 개설하였다. 신용장의 금액은 50만 달러이며, 선적항을 미국의 롱비치항으로 하고 도착항을 부산항으로 하였으나 신용장의 취소여부에 대한 표기가 없었다.

그 후 A사는 국내 옥수수 값이 하락함으로써 국내판매 계약단가가 맞지 않음으로써 일방적인 신용장취소통지를 개설은행인 C 은행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상은 이러한 신용장의 취소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하며 약정된 수출물량을 선적한 후 대금지급청구를 해 왔다.

국내의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취소가능여부가 표시되지 않는 것은 취소가능신용장이므로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야기되었다.

---

위 본건 사례는 신용장에 취소가능·불가능의 표시가 없을 경우 이러한 신용장을 취소가능신용장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신용장 통일규칙(UCP500) 제6조<sup>83)</sup>에

---

81) UCP600 Article 8

82) 최정호·이제현, 신용장실무론, 박영사 2002, pp.84~85

83) a. A Credit may be either

i) revocable, or

ii) irrevocable.

따르면 취소가능·불가능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불능신용장으로 본다 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거래 당사자인 수익자 (beneficiary), 개설의뢰인(applicant),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의 동의 없이는 개설은행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의 경우 개설은행의 취소통지에 대하여 수출상이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될 수가 없으므로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취소불가능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개설 관련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신용장취소가 가능한 반면에 취소가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동의없이도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취소 불가능여부를 명시해야 향후 분쟁에 대처할 수 있다.

## 2. 선적 준비중에 러시아의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취소를 통지 받은 사례<sup>84)</sup>

수출상 A는 러시아의 수입상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의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았다. 수출상 A가 주문 받은 상품을 생산하여 선적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A사의 수출 담당자가 신용장을 다시 검토하여 본 결과 그 신용장에는 신용장이 취소불능 (irrevocable) 또는 취소가능(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없었다. A사의 수출 담당자는 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보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6조 c항에서는 신용장에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개설은행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신용장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신용장을 취소가능신용장으로 간주하므로 신용장은 수출상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설은행이 일방적으로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용장개설은행의 주장은 타당한가?

### (1) 신용장에 취소가능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관련된 신용장통일규칙 규정

UCP600의 적용이전의 신용장통일규칙(UCP500)에서는 신용장에 취소가능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취소불능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신

b. The Credit, therefore, should clearly indicate whether it is revocable or irrevocable.

c. In the absence of such indication the Credit shall be deemed to be irrevocable. UCP500, Article 6

84)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trade\\_biz/n\\_trade\\_biz\\_L\\_viw.jsp?#0](http://www.kita.net/trade_biz/n_trade_biz_L_viw.jsp?#0)

용장통일규칙 제 4차 개정에서는 취소가능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으나 5차 개정에서 취소불능으로 간주하도록 개정되었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

제 6조

a. A Credit may be either

i. revocable, or

ii. irrevocable.

b. The Credit, therefore, should clearly indicate whether it is revocable or irrevocable.

c. In the absence of such indication the Credit shall be deemed to be irrevocable.

(a. 신용장은

i. 취소가능 또는

ii. 취소불능일수 있다.

b. 그러므로 신용장에는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인지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c. 이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신용장은 취소불능으로 간주한다.

## (2) 신용장통일규칙과 개설은행 소재지 법이 서로 다른 경우

신용장통일규칙과 현지 법률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느냐에 대하여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현지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의견을 여러 번 발표한 바가 있다. 즉 신용장은 국제조약이 아니므로 현지의 강행법규에 우선할 수 없다. 러시아의 현재 법률은 신용장에 취소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취소가능신용장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85)</sup>

## (3)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취소불능신용장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장 당사자(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은행)의 동의가 있으면 신용장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이어야 한다.

수익자가 조건변경의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매입시점에 이르도록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그 조건 변경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를

---

85) ICC, DCINSIGHT Vol 8 No.2, April-June p.4.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신용장통일규칙의 어떠한 조항에도 수익자가 조건변경의 수락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일정한 기간내에 하도록 규정하는 바가 없고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I.C.C.-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는 “수익자가 조건변경에 대하여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수락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sup>86)</sup>을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의 판례에서도 “수익자가 조건변경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Consent should not be implied from a mere failure to object to a proposed amendment)” 라는 판례가 있다. 만일 수익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변경의 내용에 일치되게 서류를 작성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제시한다면 그 때가 그 조건변경에 대하여 수익자가 동의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시점이 되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d항 iii)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

UCP500 제9조 d항 i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Article 48, an Irrevocable Credit can neither be amended nor cancell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if any), and the beneficiary.

(제48조에 의해서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면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UCP500 제9조 d항 iii

The terms of the original credit( or a credit incorporating previously accepted amendment(s)) will remain in force for the beneficiary until the beneficiary communicates his acceptance of the amendment to the bank that advised such amendment. The beneficiary should give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amendment(s). The beneficiary should give

---

86) ICC documents 470/371, 470 /373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amendment(s). If the beneficiary fails to give such notification, the tender of documents to the nominated bank or issuing bank, that conform to the credit and to not yet acceptance by the beneficiary of such amendment(s) and as of that moment the credit will be amended.

원신용장(또는 이전에 수락한 조건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의 조건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에 조건변경의 수락여부를 통고할 때까지 수익자에 대하여 계속 유효하다. 수익자는 조건변경을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여부를 통고하여야 한다. 만일 수익자가 이러한 통고를 하지 않은 채, 아직 수락되지 않은 조건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에 의하여, 신용장과 변경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하면 이는 조건변경의 수락통고로 간주되며 바로 그 시점에서 신용장조건이 변경된다

#### (4) 실무상유의점

신용장통일규칙이 현지 법률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무역관계자는 현지 법률에 대하여도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러시아에서는 개설은행이 양도가능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 현재 이 규정은 신용장통일규칙에 일치하도록 러시아 중앙은행이 개정을 검토하고 있거나 현재는 개설은행이 양도가능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 다른 하나 현지 법률이 신용장통일규칙에 우선 하는 사례는 현지 법원의 injunction 결정에 따라 서류의 위, 변조나 수출상의 사기행위가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은 서류거래이므로 서류의 위, 변조가 수출상의 사기행위가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지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신용장통일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3. 신용장거래의 준거법과 취소불능신용장 조건변경의 성립여부에 관한 소송 사례<sup>87)</sup>

수입상인 X사는 이집트의 거래선 A와 B로부터 亞麻를 수입하기 위하여 동경에

---

87)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trade\\_biz/n\\_trade\\_biz\\_L\\_viw.jsp?#0](http://www.kita.net/trade_biz/n_trade_biz_L_viw.jsp?#0)

본점을 둔, Y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집트의 C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였다. 이 신용장이 개설된 후 X사는 선적일 연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장 조건변경을 Y은행에 신청하였고, Y은행은 통지은행인 C은행을 통하여 수익자 A, B에게 통지하였다.

그런데, 수익자 A, B는 원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선적하고 C은행에 선적서류를 매입시켰다. C은행은 개설은행인 Y은행으로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하여 왔다. Y은행은 X사에 대하여 대금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X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지만 C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상환하였다.

Y은행은 신용장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X사가 Y은행에 예치한 예금과 相計하고 그 잔액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X사는 선적서류가 신용장의 선적조건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Y은행이 그 점을 심사하지 않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X사는 대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Y은행에 대하여 예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느냐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X사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이 유효하게 성립된 근거로서

① 조건변경에 대하여 수익자 A, 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② 만약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a) 본 건 신용장거래의 준거법은 일본법이며

(b) 수익자들이 Y은행에 지체없이 신용장의 조건변경에 대하여 可否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법 제509조가 준용된다.

(c) 이것이 없다하여도, 일본에서는 조건변경 신청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변경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사실적 관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판결내용

위 ①과 ②(c)의 주장은 증거상으로 인정할 수 없고 ②(a)(b)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X사의 Y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1. 본 건의 각 신용장거래에 일본법의 적용 유무를 검토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장 조건변경의 성립여부이므로 이것은 신용장의 법률관계중에서도 어음법 관계를 제외한 일반 채권법 관계로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X사의 묵시적 준거법 지정의 유무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개설은행인 Y은행의 본점 소재지와 신용장 개설지역은 동경이지만 신용장 채무의 이행지는 Y은행이 본 건 각 신용장에 대하여 이집트은행에 지급위탁을 수권하였으므로 이집트라고 인정될 수 있다. 신용장은 주로 은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생성, 발달하여 온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서 개설은행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확약한 것이므로 개설은행이 신용장거래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준거법 지정이 없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로서는 개설은행의 본점 소재지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의사가 있다고 추측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 신용장 채무의 이행지도 또한 신용장거래에서 중요성을 가지므로 본 건과 같은 개설은행의 소재지가 신용장 채무의 이행지와 다를 때에는 당사자가 개설은행의 소재지 법을 지정할 의사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반면에, 이행지 법을 지정할 의사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묵시적인 준거법 지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가령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여도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의 법률구성을 어떻게 본다고 하여도 신용장채무가 법률행위에서 생긴 것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본 건은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행위지법인 일본법이 준거법이라고 해석된다.

2. 그래서 X사가 주장하는 일본 상법 제509조가 적용되어 조건변경 신청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가 의제될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데 있어 상법 제509조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상인이 可否의 통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청내용은 그 상인의 營業部類에 속한 거래인 것을 요하는데,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계약의 신청과는 同 條項의 문언과 피신청인의 가부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결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상인과 영업을 하는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는 거래의 신청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너무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러므로 취소불능신용장 조건변경이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 상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취소불능신용장에 있어 개설은행의 확약은 신용장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또 신용장은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취소·변경도 신용장 관계당사자에게 아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그 전원의 명확한 동의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변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09조가 적용 내지 준용된다고 보고 수익자에게 가부의 통지의무를 맡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X사가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변경에 있어서 동의 의제를 주장하는 것은 채택될 수 없다.

[東京地裁], 1977년 4월 18일 판결(昭50(ワ)393호, 同(7)1449호)]

## 제2절 통지은행의 진정성에 대한 면책범위축소에 대한 수익자의 부담우려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취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역할을 하는 은행을 말하며 중간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개설은행의 요청이나 수익자로부터의 요청이 없는 한 환어음의 매입, 지급, 인수 등의 확약을 하는 은행이 아니므로 신용장의 지급역할로 보면 그 중요성이 가장 가볍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기전에 신용장의 진정성을 검토하고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통지은행의 진정성검토에 대하여 UCP500에서는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통

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통지하는 신용장의 외관상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asonable care)<sup>88)</sup>” 고 규정하여 통지은행의 책임한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UCP600에서는 통지은행의 외관상의 진정성에 대한 검토를 기존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통지은행의 진정성검토에 대한 의무를 더욱 엄격히 하여 면책범위를 축소하였다. 통지은행은 수익자와의 관계에서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에 대하여 신용장상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sup>89)</sup>. 그러나 통지은행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수익자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시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을 당할 경우 수익자는 막심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통지은행의 태만에 대하여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통지은행의 부주의로 인한 여러 분쟁이 야기되어 온 바 책임한계의 범위를 판단하기 애매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통지은행의 진정성검토에 대한 법률적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기존에는 외관상의 진정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 를 기울였음에도 아무런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 면책되었지만 UCP600에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통지은행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통지은행으로선 책임부담이 더 커지게 됨으로서 이에 대한 위험부담을 수익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가할 수 있다.

첫째, 통지은행은 통지수수료(advising commission)를 인상하여 진정성검토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위험부담을 감소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통지은행(advising bank)은 신용장 통지시에 소정의 통지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한다. 은행마다 주거래관계, 매입시의 외화비중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20,000 ~ 30,000 원 정도를 징수한다<sup>90)</sup>. 실무적으로는 통지은행이 지정은행이거나 수익자가 매입을 의뢰하는 매입은행의 역할을 할 경우 환거래수수료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래고객과의 우호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지수수료의 징수를 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은 위

---

88) b. If the Advising Bank cannot establish such apparent authenticity it must inform, without delay, the bank from which the instructions appear to have been received that it has been unable to establish the authenticity of the Credit and if it elects nonetheless to advise the Credit it must inform the Beneficiary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establish the authenticity of the Credit.-UCP500 Article 7, b

89) 강원진, 신용장론 p.77, 박영사 2004

90) 한국외환은행의 경우는 건당 20,000원. 2007년 8월 현재

험부담으로 아울러 매입시의 통지수수료공제와 같은 우호적인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우려가 있다.

둘째, 통지은행이 통지를 행하는 수익자에 대하여 엄격한 신용관계를 적용할 우려가 있다. 종전에는 단순히 신용장의 문면상의 진정성에 대하여 통지은행은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 를 기울이는 차원에서 검토하였지만 개정 UCP600에서 통지은행의 면책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본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통지은행은 수익자가 이 조항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서로 공모하여 국제무역에 전문성이 부족한 은행 직원이 간과할 수 있는 문구를 신용장에 기재한 후 수익자는 이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하여 자신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는 구실로 통지은행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법적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통지은행은 이에 대한 우려로 수익자와의 상거래관계, 건전성, 평판, 회사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통지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통지은행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자에 대해선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통지된 신용장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요구, 더 나아가서 담보 등을 요구하여 위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시도를 강구할 수도 있다.

셋째, 통지은행은 통지를 거절할 수도 있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수익자가 통지은행의 지정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통지은행의 지정은 개설은행의 고유권한이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통지은행지정요청과는 다른 별개의 통지은행을 통하여 통지받을 수도 있다. 개설은행은 수출지의 제3의 은행(통상 개설은행과의 예치환거래은행)을 통하여 통지하는데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통지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개설은행과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형성된다. 통지은행은 원칙적으로는 개설은행의 지시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선 안되고, 지시사항이 불명확할 경우는 개설은행에 재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성실한 통지은행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로 신용장검토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 법률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구<sup>91)</sup>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그러나 본 조항을 삽입하여 통지할 경우 UCP600상

---

91) 1. “Without any responsibility or engagement on our part for possible errors, commission, or delays

in the transmission there of.”

2. “If after careful examination of credit terms, you do not agree with any of them, please contact

의 규정과 대치되므로 법률적책임이나 해석에 있어서 분쟁이나 충돌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라는 애매한 문구의 사용으로 그동안 통지은행의 면책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지만 본 문구의 삭제로 통지은행의 신용장검도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한계나 법률적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관행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통지은행은 UCP600의 규정과는 별도의 면책조항을 삽입하여 통지할 우려가 있다. UCP600의 정착과정에서 면책조항의 기재를 통하여 통지은행의 면책에 대한 시도를 억제하려는 상관습이 이루어지거나 법률적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통지은행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수익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통지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로 말미암아 신용장통지가 지연되고 통지은행의 재지정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신용장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어 선의의 수익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여 원활한 신용장거래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 1. 통지은행의 신속한 통지 의무 해태에 관련된 소송사례<sup>92)</sup>

D사는 통지은행이 신속하게 통지하지 않아서(신용장 도착 후 1개월 경과되어 통지하였음) 신용장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선적기일이 촉박하여 그 기일에 맞추어서 도저히 선적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수입상에게 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수입상은 이를 거절하였다. D사는 통지은행의 통지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을 통지은행에 요구하였다.

통지은행은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손해를 입은 D사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익자 앞으로 개설된 신용장의 통지를 요청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수익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통지은행과 수익자 사이에는 통지에 관하여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나, 개설은행과 통지은행간에는 환거래 계약(correspondent arrangement)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통지은행은 위임받은 대로 신용장을 신속하게 수익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sup>93)</sup>. 이에 반하는 판례<sup>94)</sup>도 있었으나 학계와 업계의 대

---

your buyers to the appropriate amendment.”

92)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trade\\_biz/n\\_trade\\_biz\\_L\\_viw.jsp?#0](http://www.kita.net/trade_biz/n_trade_biz_L_viw.jsp?#0)

93) 미국판례 :Sound of Market Street Inc. v. Continental Bank Int' l, 623 F. Supp. 93(E.D. Pa. 1985)

부분의 전문가는 이 판례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sup>95)</sup>.

그러나 통지은행은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장 또는 그 도착사실을 서신으로 송부하거나 전신으로 송신하는 중에 발생하는 지연, 훼손 또는 기타 오류에 대하여는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UCP500 제16조

Banks assume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arising for consequences arising out of delay and/ or loss in transit of any message(s), letter(s) or document(s), or for delay, mutilation or other errors arising in the transmission of any telecommunication. Banks assume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errors in translation, or interpretation of technical terms, and reserve the right to transmit credit terms without translating them.

(은행은 모든 통보, 서신 또는 서류의 송부 중의 지연 및/또는 분실에서 발생하는 결과나 전신의 송신 중에 발생하는 지연, 훼손 또는 기타 오류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은행은 전문용어의 번역 또는 해석의 오류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신용장조건을 번역하지 아니하고 전달할 권리를 가진다.)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신속하게 통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통지은행은 신용장이 오면 신속하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L/C 도착사실을 통지한다. 전화로 연락하려고 하나 불통된 경우에는 도착일로부터 3일 등 기간을 정하여 L/C 도착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등기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

94) 미국판례 :Sound of Market Street Inc. v. Continental Bank Int' 1, 819 F. 2d 384. 388, 391-393(3rd Cir. 1987)

95) James E. Byrne, Review of Letter of Credit Operations in United States, 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s, Inc., Arlington, 1989, p. 27.



## 제5장 연구의 한계 및 기여

본 연구는 개정UCP600이 2007년 1월 1일부터 예비시행되어 2007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 시작되었다. UCP500이 13여년간 은행은 물론이거니와 무역업계에 깊이 정착되어 있는 시점에서, 새로이 등장한 UCP600에 대한 업계의 대처능력과 은행실무자의 선행적인 연구가 어느 정도는 진행되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에 대한 공통적인 주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연구라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시중은행의 외환계를 중심으로 하여 UCP600에 대하여 은행권전체 또는 개별본점을 통하여 사전교육을 받았는가의 여부, UCP500과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분석과 대응에 대한 숙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대면접촉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나 교육이 전무한 상태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역실무교육원<sup>96)</sup>을 통하여 2007년 2월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무역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직원들의 UCP600 숙지여부를 조사하였으나 극히 소수만이 개정되었다는 사실만 어렵듯이 알고 있을 뿐이었다. 본 연구의 실증적이고도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있었다.

첫째, UCP600이 시행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나 검토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타 보도자료, 무역관련기관·단체등의 체계적인 접근데이터가 전무한 상태라 자료의 수집이나 공통되는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어려웠다.

둘째, UCP600은 기존 UCP500상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실무적인 충돌이나 애매한 해석의 여지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UCP500의 실무지침서인 ISBP를 적극반영함에 따라 기존에 많이 대두되었던 UCP상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사례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새규정이 정착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분쟁에 따른 새로운 판례나 해석이 나올 것이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사례가 없어서 사례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에 제한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본 연구는 UCP500과 개정UCP600과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조문별로 새로이 규정되는 사항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새규정의 해석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수 있

---

96) 바싯트레이드캠프([www.tradexhan.com](http://www.tradexhan.com))

는 가시적인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아직 본격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많은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UCP600을 선행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예측되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은행관계자는 물론 무역관련 실무자들의 신용장업무에 보다 깊은 접근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 제6장 결론

국제무역위험은 대부분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하게 되는 바 계약의 체결시점에서 위험이 시작되고 물품의 인도와 이와 상환으로 수출대금이 결제되면 종료된다. 본 연구는 국제무역결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장결제에 있어서 신용장에 대한 통일규칙을 다루고 있는 신용장통일규칙(UCP)가 기존의 UCP500에서 UCP600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들을 살펴보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선행적으로 심층 검토함으로써 무역결제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의 수립에 있다.

UCP600의 본격적인 시행과 정착에 앞서서 신용장결제방식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국제무역과 운송수단, 의사전달수단의 변화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였던 UCP의 개정과정과 중요개정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UCP600은 UCP500에 비하여 상당히 실전적이고 명료하게 규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UCP500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학계와 업계, 기관 등에서 다양한 검토가 요구된다. 국제무역은 문화와 관습, 언어, 법률을 달리하는 격지자간의 거래이므로 대금의 수취와 물품의 인도과정은 무역의 핵심이라 할 만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결제에 있어선 관련 당사자들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기업위험에 대한 이해를 선행함으로써 국제무역위험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한다. 신용장은 다른 보편적인 결제수단과는 달리 관련당사자가 많고 신용장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에 관련된 서류의 완벽성이 요구되며, 이해당사자, 특히 개설은행의 해석여하에 따라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신용장방식으로 무역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논리적으로는 수출자의 대금회수위험이 타 결제방식보다는 완벽성을 띄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대금확약의 의무를 지고 있는 개설은행의 신용상태나 영업태도, 신의와 성실성에 따라 악용되어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수출상은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신용장은 그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 엄밀일치의 원칙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용장결제방식에서 신용장의 개설근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지만 신용장의 해석과 심사는 본 계약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금융행위이므로 계약사항과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은행이 행

하는 신용장취급업무에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으며 은행에 이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또한 물품의 실질적인 인도와 품질의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은행은 오직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를 근거로 하여 신용장을 취급하므로 계약사항과는 다른 물품의 인수, 품질저하등을 이유로 취급은행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도 없다. 따라서 수출입관련자는 신용장의 고유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외에 불필요한 행위로 지급거절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신용장의 제시조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고 서류의 충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장대금결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련은행은 취급권한을 벗어나 신용장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무리한 해석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수출입당사자, 관련은행 등 신용장의 관련당사자들은 상호입장을 존중하여 신용장제도가 보다 완벽하고 공신력있는 무역결제수단으로 그 근본역할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무역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국내참고문헌

최 중 수 외, 국제무역결제론, 삼영사 1998  
전 순 환, 신용장통일규칙, 한울 2007  
최 정 호 외, 신용장실무론, 박영사 2002  
양 영 환 외, 국제표준은행관습, 삼영사 2005  
이 상 훈, 신용장거래에서 ISBP의 적용, 한국학술정보 2007  
윤 광 운, 무역실무, 삼영사 2004  
김 현 수, 퍼펙트 국제무역사 개정3판, 세종출판사 2007  
강 원 진, 신용장론, 박영사 2004  
김 동 근, 실전무역실무, 다솜출판사 2006  
최 준 호 외, 국제무역보험론, 두남 2006  
김 억 현, 무역보험론, 두남 2003  
권 오, 국제무역보험, 두남 2004  
한국복합운송협회편, 복합운송실무, 한국복합운송협회 2003  
허 재 창, 종합무역실무연습, 박영사 2006  
차 중 곤, 화물운송론, 두남 2006  
오 원 석, 국제운송론, 박영사 1997

## 외국참고문헌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500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600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645  
·James E. Byrne, Review of Letter of Credit Operations in United States, 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s, Inc., Arlington, 1989,  
·British Imex Industries Ltd. v. Midland Bank Ltd.[1959]